

도안자이 센텀리체 1단지 입주자모집공고



※ 본 아파트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행위 등에 대해서는 주택공급신청자 및 계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1 단지 주요 정보

대표번호	홈페이지
1533-5400	https://xi.co.kr/dax ※ 해당 URL이 공식 홈페이지입니다.

해당지역				기타지역		
대전광역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 (2025.04.10. 이전부터 계속 거주)				대전광역시 1년 미만 계속 거주자 및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거주자		
주택유형	규제지역여부	재당첨제한	전매제한	거주의무기간	분양가상한제	택지유형
민영주택	비규제지역	없음	6개월	없음	미적용	민간택지

구분	입주자 모집공고일	특별공급 접수일	일반공급 1순위 접수일	일반공급 2순위 접수일	당첨자 발표일	서류 접수	계약 체결
일정	2026.04.10.(금)	2026.04.20.(월)	2026.04.21.(화)	2026.04.22.(수)	2026.04.28.(화)	2026.05.02.(토) ~ 05.06.(수)	2026.05.12.(화) ~ 05.14.(목)

2 공통 유의사항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콜센터는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이용안내 및 기본적인 청약자격 상담하고 있으며 고객 상담 과정에서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정보의 제공으로 일부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약홈 콜센터 상담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 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자세한 유의사항은 사업주체를 통해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2025.10.3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등 관계 법령에 따릅니다.
- 2024.10.0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민간 사전청약 당첨자 및 그 세대원은 '24.10.01.부터 사전당첨자 지위를 유지한 상태에서 다른 주택에 청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전당첨자 및 그 세대원이 다른 주택(APT, 불법행위재공급, 규제지역 무순위)에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사전당첨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여 사전청약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신청자격은 당첨자를 대상으로 전산조회, 제출서류 등을 통해 사업주체에서 확인하며, 확인 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될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일정기간 입주자저축 사용 및 입주자선정 제한 등)**을 받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자격, 기준, 일정, 방법,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자격	특별공급					일반공급	
	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1순위	2순위
청약통장 자격요건	6개월 이상,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충족			1순위(6개월 이상,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충족)		가입	
세대주 요건	-	-	-	필요	-	-	-
소득 또는 자산기준	-	-	적용	-	적용	-	-

※ 단, 기관추천 특별공급 중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청약통장 불필요

※ 1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가입기간이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납입한 분

※ 2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였으나,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분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시 **가점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에 한하여 주민등록표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청약신청 내용과 실제 청약자격의 일치 및 적격 여부를 확인한 후에 계약 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순위요건을 만족하였으나, 청약 신청 전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에는 청약이 불가합니다.
- 청약통장 관련 기준
 -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 기한 :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 신청가능
 - 청약예금 지역간 예치금액 차액 충족 기한 : 청약 접수 당일까지 충족 시 청약 신청가능
(단, 차액을 감액하는 경우이거나 주거지 변경없이 가입한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청약 신청할 경우에는 예치금액 변경없이 청약 신청가능)
 - 청약예금의 신청가능 주택규모 변경 기한 :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 신청가능
(단, 작은 주택규모로 변경할 경우 해당구간의 청약예치금액 충족 시 별도의 주택규모 변경 절차 없이 하위 면적 모두 신청가능)
 - 주택청약종합저축 예치금 충족 기한 : 입주자모집공고 당일까지 예치금 충족 시 청약 신청가능
 - 종전통장(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 기한 :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전환개설 완료 시 청약 신청가능
※ 단, 일부 은행에 한하여 종전통장(청약예금, 청약부금)에서 종합저축으로 최초 청약접수일 전일까지 전환개설 완료 시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관련 사항은 청약통장 가입은행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단, 청약자격 및 순위 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와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모든 주택**(APT, 불법행위재공급, 규제지역 무순위)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이 가능하며**(청약홈 및 LH청약플러스 등의 기관을 통해 청약접수 및 당첨자 선정을 진행하는 경우 포함), **2건 이상 중복신청 시 모두 무효 또는 부적격 처리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단,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각 1건씩 중복청약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간 중복청약 시 모두 무효 처리)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당첨자 발표일이 늦은 주택의 당첨은 자동 취소됩니다. (각각 동일한 청약통장으로 당첨된 경우에 한함)
- 본 아파트의 **입주자로 선정 시 당첨자로 전산관리**되며, 사용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하고,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분은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됩니다.
- 2018.12.1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제2조제4호에 의거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 가. 주택공급신청자
 -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
 -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자녀 등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
- 2018.12.1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의2, 제23조제4항, 제53조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 소유로 간주**하오니, 주택소유 여부 판정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기타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참조)
 - ※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등의 범위(국토교통부령 부칙 제3조, 제565호, 2018.12.11. 시행)
 - **분양권등 신규 계약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공급계약 체결일' 기준 주택 소유로 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소유로 봄)
 - **분양권등 매수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실거래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을 기준으로 주택 소유로 봄
- 2018.12.1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나목에 의거 **주택(분양권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는 직계존속과 직계존속의 배우자는 가점제 항목의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부양가족 판단 시 직계비속은 미혼자녀와 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인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됩니다.
- 주민등록표초본상 **말소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시·도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합니다.
- 2019.11.0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 및 제23조제2항제7호에 따라 우선공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장기해외체류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으로 신청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됩니다.

출입국사실증명서 해외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한 기간**(입국 후 7일 내 동일국가 재출국 시 계속하여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봄) 또는 **연간 183일을 초과하여** 국외에 거주한 기간은 국내 거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해당 주택건설지역으로 청약할 수 없습니다. 단, 90일 이내의 여행, 출장, 파견 등 단기 해외체류는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사례1)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나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여 국외에 체류한 경력이 있으면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는 불인정하나 기타지역 거주자로는 청약 가능합니다.

사례2)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사례3)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한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불인정되며 기타지역 거주자로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8항에 따라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 위장전입 및 불법 전매제한 등을 통한 부정한 당첨자는 「주택법」 제65조 및 「주민등록법」 제37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21.02.19.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6조에 따라 「주택법」 제64조제1항 및 제6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적발된 경우, 위반한 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10년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제1항에 따라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실시합니다.
- 한국부동산원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한 공급유형별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급유형	당첨자 선정	예비입주자 선정	동호수 결정
특별공급	유형별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름	주택형별 공급세대수의 500% 까지 추첨으로 선정	특별공급/일반공급 구분 없이 주택형별 무작위 추첨 으로 결정
일반공급	순위별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순위 : 주택형별 공급세대수의 500%까지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여 가점순으로 선정 (동점 시 추첨) ■ 2순위 :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입주자 수만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여 추첨으로 선정 	

- 특별공급 유형별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다른 특별공급 유형의 주택공급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분(기관추천 예비대상자 포함)을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이후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물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주택형별 특별공급 주택공급신청자 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60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주택형별 일반공급 1순위 주택공급신청자 수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600%를 초과할 경우 2순위 접수분은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2019.12.06.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주택공급신청자 수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합니다.
- 미계약 또는 계약해제 발생 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합니다. 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입주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명단 발표 시 함께 발표됩니다.
- 특별공급 잔여물량은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일반공급 잔여물량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물량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2018.05.04.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제6항에 의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이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예비입주자로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호수 배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의 동·호수배정일(당첨일)이 다른 주택의 당첨자 발표일보다 빠른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 체결은 가능하며 다른 주택의 당첨 내역은 무효 처리됩니다.

■ 선정된 예비입주자 현황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로부터 18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 때까지로 함) 당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https://xi.co.kr/dax>)에 공개하며, 공개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에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고, 예비입주자의 지위가 소멸될 때 예비입주자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파기처리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고령자, 장애인, 다자녀가구(단, 미성년자녀 3명 이상)의 최하층 우선배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1조)

- 최하층이라 함은 1층을 말하며(1층이 없는 경우 최저층을 말함), 최하층 주택의 분양금액이 바로 위층 주택의 분양금액보다 높은 경우는 최하층 우선배정하지 않습니다.
- 제1호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인 분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 제2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분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 제3호 미성년자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분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이 있는 경우에는 청약 시 최하층의 주택 배정을 희망한 당첨자에 대해서 해당 층을 우선 배정합니다.
-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분과 제3호에 해당하는 분 사이에 경쟁이 있으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분에게 우선 배정합니다.

- 최하층 우선배정 신청자가 최하층 우선배정 세대수보다 많은 경우 최하층이 아닌 층을 배정받을 수 있으며, 적은 경우에는 최하층 우선배정 미신청자에게도 최하층이 배정될 수 있습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 당점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제8항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상의 기간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 및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된 경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자발표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촉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 사전청약 및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제2항에 따라 주택의 공급계약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로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기간 동안에 체결합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음이 확인될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하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아래와 같이 청약신청 유형별 사용 가능한 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신청 유형	공동 인증서	금융 인증서	네이버 인증서	KB국민 인증서	토스 인증서	신한 인증서	카카오 인증서
APT / 오피스텔 / 생활숙박시설 / 도시형생활주택 / (공공지원)민간임대		O			O		
APT잔여세대 (무순위 / 임의공급 / 불법행위재공급)		O			X		

- ※ 단, APT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 중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는 유형의 주택공급신청자는 공동인증서 및 금융인증서만 사용가능합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3 단지 유의사항

- 본 아파트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6.04.10.**입니다. (청약자격 요건 중 기간, 나이, 지역우선공급 등의 판단기준일)
- 본 아파트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대전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19세 이상인 분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의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주택공급신청자 중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대전광역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2025.04.10. 이전부터 계속 거주)가 우선합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구분	특별공급	일반공급 1순위	일반공급 2순위	당첨자발표	서류접수	계약체결
일정	2026.04.20.(월)	2026.04.21.(화)	2026.04.22.(수)	2026.04.28.(화)	2026.05.02.(토) ~05.06.(수)	2026.05.12.(화) ~05.14.(목)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C/모바일 : 청약홈(09:00~17:30) ■ 현장접수 : 견본주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C/모바일 : 청약홈(09:00~17:30) ■ 현장접수 : 청약통장 가입은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C/모바일 : 청약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주체 견본주택 (대전광역시 유성구 용계동 667-6) 	

- ※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 특별공급은 사업주체 견본주택 현장접수(10:00~14:00, 은행창구 접수 불가), 일반공급은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09:00~16:00)에서 청약 가능함(단, 은행 영업점별 업무 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람)
- ※ 청약신청 취소는 청약신청일 당일 17:30까지 가능하며, 청약신청일 당일 17:30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청약신청 취소 불가
- ※ 모바일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모바일 청약 시,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인증서를 청약홈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기 바라며,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비수도권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당첨자로 선정되더라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른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지 않으며, 기존 주택 당첨으로 인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도 본 아파트 청약이 가능합니다.(단,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므로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본 주택의 해당순위(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2순위)의 청약자격과 입주자저축 요건을 충족 시, 기타 지역 거주자격으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및 별표1 규정에 의거 비규제지역에서 실제 거래가격이 6억원 이상의 주택 매매계약(최초 공급계약 및 분양권·입주권 전매를 포함)의 부동산 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과 입주계획서 및 매수자 본인이 입주할지 여부, 입주 예정시기 등 거래대상 주택의 이용계획의 신고를 의무화하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의거 부동산 계약 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 거래신고'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필요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해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비·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의 전매제한은 당첨자 발표일(2026.04.28.)부터 적용되며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특별공급	일반공급
전매제한기간	6개월	6개월

※ 전매금지 및 재당첨제한 등의 사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시점 관련 법규의 적용을 받으며, 향후 관련 법규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4 공급내역 및 공급금액

공급내역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0조의 규정에 의거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동주택과-12297호(2026.04.09.)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안 2-8지구 26블록(유성구 용계동 267-3번지 일원)
- 공급규모 : 공동주택 지하 2층 ~ 지상 42층 8개동 총 1,209세대(임대 263세대 포함) 중 일반분양 946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특별공급 432세대(기관추천 84세대, 다자녀가구 94세대, 신혼부부 151세대, 노부모부양 28세대, 생애최초 75세대 포함)]
- 입주시기 : 2029년 10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

공급대상

(단위 : m², 세대)

주택 관리번호	모델	주택형	타입 (약식 표기)	주택공급면적			기타 공용면적 (지하주차장등)	계약 면적	세대별 대지비분	공급세대수		특별공급 세대수						일반 공급 세대수	최하층 우선 배정 세대수
				주거전용	주거공용	계				타입 별	주택형 별	기관 추천	다자녀 가구	신혼 부부	노부모 부양	생애 최초	계		
2026 000104	01	084.0000A	84A	84.2706	29.9749	114.2455	56.3258	170.5713	53.1264	301	656	65	65	118	20	58	326	330	19
			84B	84.9605	29.9663	114.9268	56.7870	171.7138	53.5614	329									
			84D	84.7322	30.2729	115.0051	56.6344	171.6395	53.4174	13									
			84E	84.5300	29.9609	114.4909	56.4992	170.9901	53.2900	13									
	02	084.9913C	84C	84.9913	31.0992	116.0905	56.8075	172.8980	53.5808	185	185	19	18	33	5	17	92	93	4
	03	099.0000A	99A	99.1013	35.8597	134.9610	66.2386	201.1996	62.4761	96	105	-	11	-	3	-	14	91	3
			99B	99.8927	36.0787	135.9714	66.7675	202.7389	62.9750	9									
	합계									946	84	94	151	28	75	432	514	26	

※ 주택형 안내

- 주택형의 구분은 입주자 모집공고상의 표기이며 견본주택 및 홍보 제작물, 홈페이지는 타입(약식표기)으로 표현되었으니, 청약 및 계약 시 주택형에 대한 혼동 방지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형 내 타입(약식표기)은 동호수 배정과 함께 무작위로 추첨하기 때문에 선택이 불가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입주자 모집공고상 주택형(청약시)	084.0000A	084.9913C	099.0000A
타입(약식표기)	84A, 84B, 84D, 84E	84C	99A, 99B

특별공급 신청 자격별 · 주택형별 공급세대수

구분		084.0000A	084.9913C	099.0000A	합계	
기관추천 특별공급	국가유공자	12	4	-	16	
	장기복무 제대군인	5	1	-	6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9	3	-	12	
	장애인	대전광역시	10	3	-	13
		세종특별자치시	5	1	-	6
		충청남도	5	1	-	6
	중소기업 근로자	10	3	-	13	
	시책추진	9	3	-	12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65	18	11	94	
신혼부부 특별공급		118	33	-	151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20	5	3	28	
생애최초 특별공급		58	17	-	75	
합계		326	92	14	432	

※ 주택형별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는 공급세대수, 비율 등을 감안하여 배정하였으며 배정 호수가 없는 주택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단위 : 세대, 원)

주택형	타입 (약식 표기)	층구분	해당 세대수	공급금액				계약금(10%)			중도금(60%)						잔금(30%) 입주시
				대지비	건축비	부가세	계	1차	2차	3차	1차(10%)	2차(10%)	3차(10%)	4차(10%)	5차(10%)	6차(10%)	
								계약시	계약후 30일 이내	2026. 11.16	2027. 02.15	2027. 07.12	2027. 12.13	2028. 06.12	2028. 11.13	2029. 04.16	
084. 0000A	84A	2층	10	361,363,163	361,836,837	-	723,200,000	10,000,000	26,160,000	36,160,000	72,320,000	72,320,000	72,320,000	72,320,000	72,320,000	72,320,000	216,960,000
		3층	6	361,363,163	364,836,837	-	726,200,000	10,000,000	26,310,000	36,310,000	72,620,000	72,620,000	72,620,000	72,620,000	72,620,000	72,620,000	217,860,000
		4층	8	361,363,163	374,836,837	-	736,200,000	10,000,000	26,810,000	36,810,000	73,620,000	73,620,000	73,620,000	73,620,000	73,620,000	73,620,000	220,860,000
		5-9층	38	361,363,163	387,836,837	-	749,200,000	10,000,000	27,460,000	37,460,000	74,920,000	74,920,000	74,920,000	74,920,000	74,920,000	74,920,000	224,760,000
		10-19층	74	361,363,163	402,836,837	-	764,200,000	10,000,000	28,210,000	38,210,000	76,420,000	76,420,000	76,420,000	76,420,000	76,420,000	76,420,000	229,260,000
		20-29층	91	361,363,163	411,836,837	-	773,200,000	10,000,000	28,660,000	38,660,000	77,320,000	77,320,000	77,320,000	77,320,000	77,320,000	77,320,000	231,960,000
		30층이상	74	361,363,163	414,836,837	-	776,200,000	10,000,000	28,810,000	38,810,000	77,620,000	77,620,000	77,620,000	77,620,000	77,620,000	77,620,000	232,860,000
	84B	2층	9	361,026,407	362,173,593	-	723,200,000	10,000,000	26,160,000	36,160,000	72,320,000	72,320,000	72,320,000	72,320,000	72,320,000	72,320,000	216,960,000
		3층	11	361,026,407	365,173,593	-	726,200,000	10,000,000	26,310,000	36,310,000	72,620,000	72,620,000	72,620,000	72,620,000	72,620,000	72,620,000	217,860,000
		4층	8	361,026,407	375,173,593	-	736,200,000	10,000,000	26,810,000	36,810,000	73,620,000	73,620,000	73,620,000	73,620,000	73,620,000	73,620,000	220,860,000
		5-9층	44	361,026,407	388,173,593	-	749,200,000	10,000,000	27,460,000	37,460,000	74,920,000	74,920,000	74,920,000	74,920,000	74,920,000	74,920,000	224,760,000
		10-19층	90	361,026,407	403,173,593	-	764,200,000	10,000,000	28,210,000	38,210,000	76,420,000	76,420,000	76,420,000	76,420,000	76,420,000	76,420,000	229,260,000
		20-29층	89	361,026,407	412,173,593	-	773,200,000	10,000,000	28,660,000	38,660,000	77,320,000	77,320,000	77,320,000	77,320,000	77,320,000	77,320,000	231,960,000
		30층이상	78	361,026,407	415,173,593	-	776,200,000	10,000,000	28,810,000	38,810,000	77,620,000	77,620,000	77,620,000	77,620,000	77,620,000	77,620,000	232,860,000
	84D	3층	1	356,826,283	369,373,717	-	726,200,000	10,000,000	26,310,000	36,310,000	72,620,000	72,620,000	72,620,000	72,620,000	72,620,000	72,620,000	217,860,000
		5-9층	5	356,826,283	392,373,717	-	749,200,000	10,000,000	27,460,000	37,460,000	74,920,000	74,920,000	74,920,000	74,920,000	74,920,000	74,920,000	224,760,000
		10-19층	7	356,826,283	407,373,717	-	764,200,000	10,000,000	28,210,000	38,210,000	76,420,000	76,420,000	76,420,000	76,420,000	76,420,000	76,420,000	229,260,000
	84E	4층	2	357,262,252	378,937,748	-	736,200,000	10,000,000	26,810,000	36,810,000	73,620,000	73,620,000	73,620,000	73,620,000	73,620,000	73,620,000	220,860,000
		5-9층	3	357,262,252	391,937,748	-	749,200,000	10,000,000	27,460,000	37,460,000	74,920,000	74,920,000	74,920,000	74,920,000	74,920,000	74,920,000	224,760,000
		10-19층	8	357,262,252	406,937,748	-	764,200,000	10,000,000	28,210,000	38,210,000	76,420,000	76,420,000	76,420,000	76,420,000	76,420,000	76,420,000	229,260,000

(단위 : 세대, 원)

주택형	타입 (약식 표기)	층구분	해당 세대수	공급금액				계약금(10%)			중도금(60%)						잔금(30%) 입주시
				대지비	건축비	부가세	계	1차	2차	3차	1차(10%)	2차(10%)	3차(10%)	4차(10%)	5차(10%)	6차(10%)	
								계약시	계약후 30일 이내	2026. 11.16	2027. 02.15	2027. 07.12	2027. 12.13	2028. 06.12	2028. 11.13	2029. 04.16	
084. 9913C	84C	2층	4	357,794,056	359,405,944	-	717,200,000	10,000,000	25,860,000	35,860,000	71,720,000	71,720,000	71,720,000	71,720,000	71,720,000	71,720,000	215,160,000
		3층	6	357,794,056	362,405,944	-	720,200,000	10,000,000	26,010,000	36,010,000	72,020,000	72,020,000	72,020,000	72,020,000	72,020,000	72,020,000	216,060,000
		4층	5	357,794,056	370,405,944	-	728,200,000	10,000,000	26,410,000	36,410,000	72,820,000	72,820,000	72,820,000	72,820,000	72,820,000	72,820,000	218,460,000
		5-9층	26	357,794,056	385,405,944	-	743,200,000	10,000,000	27,160,000	37,160,000	74,320,000	74,320,000	74,320,000	74,320,000	74,320,000	74,320,000	222,960,000
		10-19층	51	357,794,056	399,405,944	-	757,200,000	10,000,000	27,860,000	37,860,000	75,720,000	75,720,000	75,720,000	75,720,000	75,720,000	75,720,000	227,160,000
		20-29층	53	357,794,056	408,405,944	-	766,200,000	10,000,000	28,310,000	38,310,000	76,620,000	76,620,000	76,620,000	76,620,000	76,620,000	76,620,000	229,860,000
		30층이상	40	357,794,056	411,405,944	-	769,200,000	10,000,000	28,460,000	38,460,000	76,920,000	76,920,000	76,920,000	76,920,000	76,920,000	76,920,000	230,760,000
099. 0000A	99A	2층	3	438,760,974	415,853,660	41,585,366	896,200,000	10,000,000	34,810,000	44,810,000	89,620,000	89,620,000	89,620,000	89,620,000	89,620,000	89,620,000	268,860,000
		3층	2	438,760,974	418,580,933	41,858,093	899,200,000	10,000,000	34,960,000	44,960,000	89,920,000	89,920,000	89,920,000	89,920,000	89,920,000	89,920,000	269,760,000
		4층	3	438,760,974	452,217,296	45,221,730	936,200,000	10,000,000	36,810,000	46,810,000	93,620,000	93,620,000	93,620,000	93,620,000	93,620,000	93,620,000	280,860,000
		5-9층	12	438,760,974	480,399,115	48,039,911	967,200,000	10,000,000	38,360,000	48,360,000	96,720,000	96,720,000	96,720,000	96,720,000	96,720,000	96,720,000	290,160,000
		10-19층	25	438,760,974	491,308,205	49,130,821	979,200,000	10,000,000	38,960,000	48,960,000	97,920,000	97,920,000	97,920,000	97,920,000	97,920,000	97,920,000	293,760,000
		20-29층	30	438,760,974	500,399,115	50,039,911	989,200,000	10,000,000	39,460,000	49,460,000	98,920,000	98,920,000	98,920,000	98,920,000	98,920,000	98,920,000	296,760,000
		30층이상	21	438,760,974	509,490,024	50,949,002	999,200,000	10,000,000	39,960,000	49,960,000	99,920,000	99,920,000	99,920,000	99,920,000	99,920,000	99,920,000	299,760,000
	99B	3층	1	432,810,747	423,990,230	42,399,023	899,200,000	10,000,000	34,960,000	44,960,000	89,920,000	89,920,000	89,920,000	89,920,000	89,920,000	89,920,000	269,760,000
		5-9층	3	432,810,747	485,808,412	48,580,841	967,200,000	10,000,000	38,360,000	48,360,000	96,720,000	96,720,000	96,720,000	96,720,000	96,720,000	96,720,000	290,160,000
		10-19층	5	432,810,747	496,717,503	49,671,750	979,200,000	10,000,000	38,960,000	48,960,000	97,920,000	97,920,000	97,920,000	97,920,000	97,920,000	97,920,000	293,760,000

유의사항

- 세대 타입(약식표기)별 계약면적에는 계단실, 세대벽체면적 등의 주거공용면적과 지하주차장, 관리사무소, 경비실, 주민공동시설, 기계/전기실 등 그 밖의 기타 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며, 근린생활시설은 상기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최하층이라 함은 각호의 최저층을 말하며 1층 또는 2층이 필로티인 경우 필로티 바로 위층을 최저층으로 합니다.
- 면적은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표현되므로 면적 계산상 단수조정으로 인하여 각 세대별 계약 면적은 전체 총 연면적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소수점 이하의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오차 조정에 따른 단수 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공급금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상기 세대별 계약 면적과 대지지분은 인허가 과정, 지적 정리, 진입로(가감속 차로) 등 기부채납, 확정측량 등의 결과에 따른 공부 정리 시 면적증감이 있을 수 있고, 소수점 이하 단수 정리에 따라 실제 등기 시 공급면적 및 대지지분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소수점 이하 면적변동 및 이로 인한 지분변동에 대해서는 차후 정산하지 않습니다.
- 법령이 허용하는 오차 범위 내에서 면적증감이 있을 수 있고 허용오차 범위 내에서는 별도 정산을 하지않기로 하며, 허용오차를 초과하는 증감이 있을 때는 계약서와 등기부상의 면적 차이에 대하여 분양 당시 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이전까지 상호 정산합니다.
- 상기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은 당해 세대 또는 동의 공용부분 실제면적과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동일 타입(약식표기)의 경우라도 해당세대 주거공용부분은 동별로 형태 및 면적 등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근린생활시설은 별도의 분양시설로서 아파트 계약자가 임의로 설계변경이나 대지지분변경, 공용부사용제한설정 등을 요구할 수 없으며, 공동주택단지와 별도구획이 불가하므로 향후 각 대지지분, 공용부지분 등에 따른 구획 및 분할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 세대별 대지지분은 타입(약식표기)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향후 사업계획 변경, 지적확정측량 결과 또는 공부정리절차 등 부득이한 경우에 따라 계약자의 동의없이 대지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상기 공급금액은 사업주체의 자체 심의 결과 타입별, 동별, 층별 등으로 차등을 두어 조정하여 책정한 금액입니다.
- 주택형의 구분은 입주자 모집공고상의 표기이며 견본주택 및 홍보 제작물, 홈페이지는 타입(약식표기)으로 표현되었으니, 청약 및 계약 시 주택형에 대한 혼동 방지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형 내 타입(약식표기)은 동호수 배정과 함께 무작위로 추첨하기 때문에 선택이 불가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급금액에는 인지세, 취득세, 소유권이전등기 비용 및 그 외 제세공과금이 미포함된 금액이며, 이는 계약자 부담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공급금액에는 발코니확장 및 추가선택품목 비용이 포함되지 아니한 가격입니다. 또한 추가선택품목은 계약자가 선택하여 계약하는 사항으로 공급계약 시 또는 공급계약 체결 이후 별도의 계약 일정을 통해 선택 가능합니다.
- 층수는 건립 동별, 해당 타입(약식표기)이 속한 라인의 최상층 기준입니다.

- 공급대금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며, 잔금은 사용검사일 이후에 받으며 입주(열쇠불출일) 전에 완납하여야 합니다. 단, 임시사용승인을 얻어 입주하는 경우에는 전체 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을 입주일에 납부하고, 전체 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잔금은 사용검사일 이후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공급대금(2차 및 3차 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부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해당일 이후 최초 도래하는 은행영업일을 기준으로 합니다.(연체료 납부 시 토요일 또는 공휴일로 인해 납부가 지연되는 경우라도 납부지연에 따른 연체일수로 산정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라며, 연체료율은 공급계약서에 의거하여 산정)
- 계약금 2차, 3차 납부 일정은 계약시점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계약 시 계약서에 표기된 공급대금 납부 일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공급대금 납부일정은 사전에 계약자 본인이 숙지하고 청약 및 계약체결을 하여야 합니다.
- 입주 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비 예치금(선수관리비)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 공급대금에 계산되지 않았거나, 변경되는 토지 관련 조세는 추후 부과되는 실과세 금액을 잔금 납부시 납부하여야 합니다.
- 본 아파트의 분양시점에 따라 향후 분양조건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변경된 분양조건은 소급해서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중도금 금융대출을 원하는 경우 계약자가 분양계약 체결 후 지정된 중도금대출 협약 은행과 별도의 중도금대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세부적인 대출신청일정 등은 별도 안내 예정) 단, 대출 미신청자와 본인의 부적격 사유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한 계약자는 상기 납부일정에 맞추어 본인이 직접 납부하여야 하고, 이때 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되며, 이를 사유로 분양계약의 해지를 요청할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의 구조물 등 제반 사항은 설계도면 등을 통하여 반드시 확인 후 계약하여야 하며, 그 밖의 광고, 인쇄물이나 구두 약정의 내용을 근거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문에는 편집, 인쇄 과정 상 착오 및 오타자 등이 있을 수 있으니 필히 청약 및 계약 전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고 응하시기 바랍니다. 미숙지로 인한 착오행위 등에 대한 책임은 주택공급신청자 본인에게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 관계법령이 우선하며 본 입주자모집공고와 공급계약서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 공급계약서가 우선합니다.)

5 특별공급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 방법

특별공급 신청 요건 등에 관한 특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

조항	신청유형	내용	유의사항
제1항 (배우자의 혼인전 이력 배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혼부부 ■ 생애최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 당첨된 이력에 따른 청약 제한사항이 있더라도 이를 배제하고 청약신청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용횟수 제한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애최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더라도 이를 배제하고 청약신청 가능(혼인 전 처분완료한 경우에 한함) 	
제2항 (혼인특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혼부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공급신청자가 혼인 전 당첨된 이력에 따른 청약 제한사항(재당첨 제한, 특별공급 횟수 제한)이 있더라도 이를 배제하고 청약신청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혼인특례는 본인 기준 1회에 한하여 적용 가능
제3항 (출산특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 노부모부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4.6.19. 이후 출생한 자녀(태아 또는 `24.6.19. 이후 출생한 사람을 입양한 경우 포함)가 있는 경우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가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이력이 있더라도 제55조에 따른 특별공급 횟수 제한에도 불구하고 청약신청 가능 → 이 경우, 특별공급의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에도 불구하고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기존주택 처분 조건*으로 청약신청 가능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10px 0;"> <p>*기존주택 처분 조건 :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함</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존 소유 주택의 소유권 처분 조건을 승낙할 것 2. 공급받은 주택의 입주 전에 기존 소유 주택의 소유권 처분에 관한 서류(「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3조제4항 각 호)를 사업주체에게 제출할 것 3. 공급받은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기존 소유 주택의 처분을 완료할 것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 경우, 신혼부부 특별공급(공공주택 제외) 추첨제 주택공급신청자의 부동산가액 산정 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가액은 합산하지 않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산특례는 세대 기준 1회에 한하여 적용 가능 ■ 특별공급 횟수 제한 외 다른 청약 제한사항은 배제할 수 없음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이력이 없는 경우 출산특례 적용 불가 ■ 주택공급신청자 및 배우자 외의 세대원이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이력이 있거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출산특례 적용 불가

※ 혼인특례 또는 출산특례를 사용하여 청약하려는 분은 **청약신청 시 특례 사용 여부를 선택**하여야 하며, 청약신청 시 선택한 특례 사용여부는 **변경·취소할 수 없습니다.**

- 특례를 사용하여 본 아파트의 특별공급 입주자 및 추가입주자로 선정될 경우,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 없이 특별공급 당첨자 및 특례 사용자로 명단 관리**하며 향후 혼인특례 사용자 본인은 혼인특례를 재사용할 수 없고, 출산특례 사용자가 속한 세대는 출산특례를 재사용할 수 없습니다.

- 특례를 사용하지 않아도 특별공급 입주자로 선정될 수 있는 분이 착오에 의해 특례를 사용한 경우라 하더라도 **특례 사용 사실은 정정될 수 없음**이며, 특례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분이 특례를 사용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당첨이 취소되고 부적격 당첨자로 관리합니다.

※ **혼인특례와 출산특례를 동시에 사용하여 청약할 수 없습니다.**

※ 기존주택 처분 조건으로 특별공급에 당첨된 분이 공급받은 주택의 소유권 이전 등기 시점까지 기존주택 처분 완료함을 증빙하지 못한 경우 공급계약이 취소되며, 입주가 불가합니다.

특별공급 공통사항

구분	내용																				
공급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따라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제1호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 및 제55조의3을 적용하는 경우 특별공급 횟수 제한 예외)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1세대 2인 이상이 청약하여 한 명이라도 당첨될 경우 중복청약으로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 다만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2에 따라 부부는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에 대해 중복청약할 수 있으며, 중복당첨 시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table border="1" data-bbox="268 488 1501 763"> <thead> <tr> <th colspan="2">구분</th> <th>처리방법</th> </tr> </thead> <tbody> <tr> <td colspan="2">당첨자발표일이 다른 주택</td> <td>당첨자발표일이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당첨자발표일이 늦은 당첨건은 부적격 처리</td> </tr> <tr> <td rowspan="2">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주택</td> <td>부부가 중복당첨된 경우</td> <td>접수일시가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접수일시가 늦은 당첨건은 무효 처리 ※ 분 단위 접수일시가 동일한 경우,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주택공급신청자의 당첨건이 유효</td> </tr> <tr> <td>부부 외 세대원이 중복당첨된 경우</td> <td>모두 부적격 처리</td> </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별공급 신청자가 일반공급에도 중복 청약이 가능하나 특별공급에 당첨된 경우 일반공급은 무효로 처리(특별공급에 예비입주자로 당첨된 경우에도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정에서 제외)하고, 특별공급 신청자가 타 유형의 특별공급에 중복 청약 시 둘 다 무효처리 됩니다.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조건, 청약통장 자격조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특별공급 당첨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도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사용 간주),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외국인은 주민등록법상 세대원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자격을 필요로 하는 특별공급 청약이 불가합니다. 	구분		처리방법	당첨자발표일이 다른 주택		당첨자발표일이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당첨자발표일이 늦은 당첨건은 부적격 처리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주택	부부가 중복당첨된 경우	접수일시가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접수일시가 늦은 당첨건은 무효 처리 ※ 분 단위 접수일시가 동일한 경우,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주택공급신청자의 당첨건이 유효	부부 외 세대원이 중복당첨된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									
구분		처리방법																			
당첨자발표일이 다른 주택		당첨자발표일이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당첨자발표일이 늦은 당첨건은 부적격 처리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주택	부부가 중복당첨된 경우	접수일시가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접수일시가 늦은 당첨건은 무효 처리 ※ 분 단위 접수일시가 동일한 경우,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주택공급신청자의 당첨건이 유효																			
	부부 외 세대원이 중복당첨된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																			
무주택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 생애최초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주 요건 ※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는 '2페이지(2. 공통유의사항)' 참고 																				
청약통장 자격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추천 특별공급(국가공공자, 장애인은 제외)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자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85㎡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생애최초 특별공급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자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85㎡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 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p style="text-align: center;">[청약통장의 예치금액]</p> <table border="1" data-bbox="288 1832 1493 2033"> <thead> <tr> <th>구분</th> <th>그 밖의 광역시 (대전광역시)</th> <th>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th> <th>특별시 및 부산광역시</th> </tr> </thead> <tbody> <tr> <td>전용면적 85㎡ 이하</td> <td>250만원</td> <td>200만원</td> <td>300만원</td> </tr> <tr> <td>전용면적 102㎡ 이하</td> <td>400만원</td> <td>300만원</td> <td>600만원</td> </tr> <tr> <td>전용면적 135㎡ 이하</td> <td>700만원</td> <td>400만원</td> <td>1,000만원</td> </tr> <tr> <td>모든면적</td> <td>1,000만원</td> <td>500만원</td> <td>1,500만원</td> </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따른 거주지역을 말합니다. ※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 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 가능합니다. 	구분	그 밖의 광역시 (대전광역시)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전용면적 85㎡ 이하	250만원	2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400만원	300만원	6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700만원	400만원	1,000만원	모든면적	1,000만원	500만원	1,500만원
구분	그 밖의 광역시 (대전광역시)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전용면적 85㎡ 이하	250만원	2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400만원	300만원	6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700만원	400만원	1,000만원																		
모든면적	1,000만원	500만원	1,500만원																		

기관추천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세대수의 10% 범위) : **84세대**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춘 무주택세대구성원**

- ①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 해당 기관장의 추천 및 인정 서류를 받은 분(단, 거주요건 등 우선순위 기준은 해당 기관장이 정하며,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는 제외함)
- ② 청약통장에 가입하여 해당 요건을 갖춘 분(가입기간 6개월 이상 경과,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단, 국가유공자, 장애인 제외)

※ 추천기관

구분	기관
국가유공자, 장기복무 제대군인	국가보훈부 대전지방보훈청 복지과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국군복지단 복지사업운영과
장애인	대전광역시청 장애인복지과, 세종특별자치시청 노인장애인과, 충청남도청 장애인복지과
중소기업 근로자	대전세종지방중소벤처기업청 지역정책과
시책추진	대전광역시청 도시주택국 주택정책과

■ 당첨자 선정방법

-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해당기관에 먼저 신청하여야 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6조에 의거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하므로, 사업주체 및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은 대상자 선정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 기관추천 특별공급 확정대상자 및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미신청시 당첨자선정 및 동호배정에서 제외되며 계약불가)
- 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분과 함께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되므로,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 : 공급세대수의 10% 범위) : **94세대**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춘 무주택세대구성원**

- ① 대전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에 거주하는 분
- ② 만19세 미만의 자녀 2명(태아, 입양자녀 포함) 이상을 둔 분
- ③ 청약통장에 가입하여 해당 요건을 갖춘 분(가입기간 6개월 이상 경과,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다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 자녀는 민법상 미성년자를 말하며, 자녀가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 당첨자 선정방법

선정기준	①거주지역 ▶ ②배점 ▶ ③미성년 자녀수 ▶ ④주택공급신청자 연령(연월일 계산) ▶ ⑤추첨
------	--

- '①거주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대전광역시 1년 이상) → 기타지역 거주자(대전광역시 1년 미만,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거주자)
- '②배점'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배점기준표'에 의한 점수 순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 유의사항

- 주택공급신청자 본인이 직접 작성한 점수가 본인의 기재 오류에 의한 잘못으로 판명될 경우, 당첨이 취소될 수 있으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에 표시되지 않은 내용은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을 따릅니다.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배점기준표

평점요소	총배점	배점기준		비고
		기준	점수	
(1) 미성년 자녀수	40	4명 이상	40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19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태아, 입양자녀, 전혼자녀 포함)
		3명	35	
		2명	25	

평점요소	총배점	배점기준		비고
		기준	점수	
(2) 영유아 자녀수	15	3명 이상	15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미만의 영유아 자녀(태아, 입양자녀, 전혼자녀 포함)
		2명	10	
		1명	5	
(3) 세대구성	5	3세대 이상	5	■ 주택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이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 주택공급신청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분
		한부모 가족	5	
(4) 무주택기간	20	10년 이상	20	■ 배우자의 직계존속(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도 무주택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주택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 주택공급신청자가 성년(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이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하되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함)부터 무주택 기간 산정
		5년 이상 ~ 10년 미만	15	
		1년 이상 ~ 5년 미만	10	
(5) 해당 시·도 거주기간	15	10년 이상	15	■ 주택공급신청자가 성년자(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로서 해당시도(대전광역시)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을 산정
		5년 이상 ~ 10년 미만	10	
		1년 이상 ~ 5년 미만	5	
(6)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5	10년 이상	5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청약통장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단,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함)
계	100			

- (1), (2)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이혼·재혼의 경우 자녀가 주택공급신청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3) : 한부모 가족의 경우 한부모가족증명서로 확인
 (3), (4) : 주택소유여부 판단 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를 적용
 (4), (5)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주민등록표초본으로 확인
 (6) : 입주자저축 순위확인서로 확인

신혼부부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 :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세대수의 18% 범위) : 151세대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춘 무주택세대구성원
 - ① 대전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에 거주하는 분
 - ② 혼인기간이 7년 이내(혼인신고일 기준, 동일인과의 재혼인 경우에는 이전 혼인기간을 포함)인 분
 - ③ 청약통장에 가입하여 해당 요건을 갖춘 분(가입기간 6개월 이상 경과,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④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분

■ 당첨자 선정방법

선정기준	①소득구분 ▶ ②순위 ▶ ③거주지역 ▶ ④미성년 자녀수 ▶ ⑤추첨
------	--------------------------------------

- '①소득구분' : 아래 단계별 당첨자 선정

단계	소득구분	내용
1단계	신생아 우선공급 (25%)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분(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00% 이하여야 함)
2단계	신생아 일반공급 (10%)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초과 140% 이하인 분(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16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40% 이하여야 함)

단계	소득구분	내용
3단계	우선공급 (25%)	■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분(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00% 이하여야 함)
4단계	일반공급 (10%)	■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초과 140% 이하인 분(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16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40% 이하여야 함)
5단계	추첨공급	■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40% 초과하나(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초과),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 각 단계별 낙첨자는 다음 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되나, 2단계 신청자 중 낙첨자는 3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4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됩니다.

※ 1단계 및 2단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②순위'를 고려하지 않고 '③지역'▶'④미성년 자녀수'▶'⑤추첨'의 순서에 따라 선정합니다.

※ 5단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순위와 관계없이 해당지역(대전광역시 1년이상 거주자) 거주자에게 우선공급하고,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으로 선정합니다.

- '②순위'

순위	내용
1순위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태아, 입양자녀 포함)하여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분
2순위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분

- '③거주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대전광역시 1년 이상) → 기타지역 거주자(대전광역시 1년 미만,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거주자)

■ 자녀기준

- 자녀는 「민법」 제855조제2항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외의 출생자*를 포함합니다.

*현재 혼인관계인 배우자와의 자녀를 혼인신고일 전에 출생신고한 경우

- '②순위' 판단 시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내 출산(태아, 입양자녀 포함)한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1순위 신청가능합니다.

- '④미성년 자녀수' 판단 시 : 재혼인 경우 주택공급신청자의 전혼자녀(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 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재혼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합니다.

- '④미성년 자녀수' 판단 시 : 재혼인 경우 재혼 배우자의 전혼자녀(재혼 배우자가 이전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 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주택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합니다.

- 임신·입양의 경우 입주 시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하며,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임신,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출산의 경우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으로 판단합니다.

※ 임신 상태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확인합니다.

※ 입양의 경우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합니다.

■ 소득기준

- 소득 확인 시점

입주자모집공고일	상시근로자 근로소득 확인 시점	사업자 및 프리랜서 등 소득 확인 시점
04.01. ~ 06.30.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해당 세대의) 전전년도 소득

- 2025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공급유형		구분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신생아우선공급 및 우선공급	배우자 소득 없음	100% 이하	~7,533,763원	~8,802,202원	~9,326,985원	~9,906,263원	~10,485,541원	~11,064,819원
	신혼부부 모두 소득 있음	120% 이하	~9,040,516원	~10,562,642원	~11,192,382원	~11,887,516원	~12,582,649원	~13,277,783원
신생아일반공급 및 일반공급	배우자 소득 없음	100% 초과 ~140% 이하	7,533,764원~10,547,268원	8,802,203원~12,323,083원	9,326,986원~13,057,779원	9,906,264원~13,868,768원	10,485,542원~14,679,757원	11,064,820원~15,490,747원
	신혼부부 모두 소득 있음	120% 초과 ~160% 이하	9,040,517원~12,054,021원	10,562,643원~14,083,523원	11,192,383원~14,923,176원	11,887,517원~15,850,021원	12,582,650원~16,776,866원	13,277,784원~17,703,710원
추첨공급	배우자 소득 없음	140% 초과, 부동산가액 충족	10,547,269원~	12,323,084원~	13,057,780원~	13,868,769원~	14,679,758원~	15,490,748원~
	신혼부부 모두 소득 있음	160% 초과, 부동산가액 충족	12,054,022원~	14,083,524원~	14,923,177원~	15,850,022원~	16,776,867원~	17,703,711원~

-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1인당 평균소득(579,278) x (N-8)}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 가구원수 산정 기준 :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인정하되,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포함합니다.
- ※ 월평균 소득산정 대상 : 가구원수에 포함되는 가구원 중 만19세 이상인 성년자(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 부양) 포함). 단, 세대의 실종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 월평균소득 : 소득산정 대상자별 월평균소득을 합산한 금액.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총급여액(21번) 및 소득금액증명상의 지급받은 총액(수입금액)을 근로기간(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으로 나누어 산정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소득금액을 사업기간(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으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 ※ 소득산정은 주택공급신청자의 상황(계속적인 근로자 또는 사업자, 신규취업자, 이직자, 신규사업자, 프리랜서 등)에 따라 산정 방식이 달리 적용되므로 본인의 상황을 "주택청약 FAQ(국토교통부 발간)"를 확인하여야 하며, 소득증빙 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부적격 처리 또는 계약 포기 로 간주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본인의 자격요건 및 증빙서류를 확인한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자산기준

- 부동산가액 산출기준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 및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제4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 자산 보유 기준

구분	보유기준	자산보유기준 세부내역												
부동산 (건축물 +토지)	3억 3,100만원 이하	건축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r> <td></td> <td>건축물 종류</td> <td>지방세정 시가표준액</td> </tr> <tr> <td rowspan="2">주택</td> <td>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td> <td>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td> </tr> <tr> <td>단독주택</td> <td>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td> </tr> <tr> <td></td> <td>주택 외</td> <td>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td> </tr> </table>		건축물 종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주택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주택 외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건축물 종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주택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주택 외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표준지·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이지만, 아래 경우는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구·읍·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대장에 같은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초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축산법」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중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 건축물가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의 부속토지도 토지가액에 포함(개별공시지가 기준) 													

■ 유의사항

- 주택공급신청자 본인이 직접 작성한 소득 및 조건이 본인의 기재 오류에 의한 잘못으로 판명될 경우, 당첨이 취소될 수 있으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에 표시되지 않은 내용은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을 따릅니다.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 : 공급세대수의 3% 범위) : 28세대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춘 무주택세대주
 - ① 대전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에 거주하는 분
 - ②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하고 있는 분
 - ③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분
 - ④ 청약통장에 가입하여 해당 요건을 갖춘 분(가입기간 6개월 이상 경과,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부양'의 의미는 같은 주민등록지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 ※ 무주택기간은 주택공급신청자 및 그 배우자, 피부양자(노부모) 및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 따라 피부양자 및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주택공급신청자의 무주택기간에서 제외)
-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 ※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피부양자의 배우자 포함)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됩니다.

■ 당첨자 선정방법

선정기준	①거주지역 ▶ ②가점 ▶ ③청약통장 가입기간 ▶ ④추첨
------	--------------------------------

- '①거주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대전광역시 1년 이상) → 기타지역 거주자(대전광역시 1년 미만,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거주자)
- '②가점' : '19페이지(가점제 적용기준)'를 바탕으로 주택공급신청자 본인이 작성한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가점 산정기준'에 의거한 청약가점 점수를 우선순위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③청약통장 가입기간' : 가입기간은 순위기산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청약통장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하며,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 유의사항

- 주택공급신청자 본인이 직접 작성한 점수가 본인의 기재 오류에 의한 잘못으로 판명될 경우, 당첨이 취소될 수 있으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에 표시되지 않은 내용은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을 따릅니다.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가점 산정기준

가점항목	가점상한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1) 무주택기간	32	만30세미만 미혼자	0	8년이상 ~ 9년미만	18
		1년 미만	2	9년이상 ~ 10년미만	20
		1년이상 ~ 2년미만	4	10년이상 ~ 11년미만	22
		2년이상 ~ 3년미만	6	11년이상 ~ 12년미만	24
		3년이상 ~ 4년미만	8	12년이상 ~ 13년미만	26
		4년이상 ~ 5년미만	10	13년이상 ~ 14년미만	28
		5년이상 ~ 6년미만	12	14년이상 ~ 15년미만	30
		6년이상 ~ 7년미만	14	15년이상	32
		7년이상 ~ 8년미만	16		
(2) 부양가족수 (주택공급신청자 본인 제외)	35	0명	5	4명	25
		1명	10	5명	30
		2명	15	6명 이상	35
		3명	20		
(3)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17	6개월 미만	1	8년이상 ~ 9년미만	10
		6개월 이상 ~ 1년미만	2	9년이상 ~ 10년미만	11
		1년이상 ~ 2년미만	3	10년이상 ~ 11년미만	12
		2년이상 ~ 3년미만	4	11년이상 ~ 12년미만	13
		3년이상 ~ 4년미만	5	12년이상 ~ 13년미만	14
		4년이상 ~ 5년미만	6	13년이상 ~ 14년미만	15
		5년이상 ~ 6년미만	7	14년이상 ~ 15년미만	16
		6년이상 ~ 7년미만	8	15년이상	17
7년이상 ~ 8년미만	9				

※ 본인 청약가점 점수 = (1) + (2) + (3)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 시에는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 산정 시 배우자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를 합산하지 않습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3조 :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세대수의 9% 범위) : **75세대**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춘 무주택세대구성원**

- ① 대전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에 거주하는 분
- ② 생애최초(세대에 속한 모든 자가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한정)로 주택을 구입하는 분
- ③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분
- ④ 청약통장에 가입하여 해당 요건을 갖춘 자(가입기간 6개월 이상 경과,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⑤ 「생애최초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분
- ⑥ 아래 '가' 또는 '나'에 해당하는 분

가.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 주택공급신청자가 혼인 중이 아닌 경우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자녀)가 있는 분
나. 1인 가구(혼인 중이 아니면서 미혼인 자녀도 없는 분)

⑦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분

-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 ※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5조의3에 따라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 주택을 소유하였다가 혼인 전 처분한 이력은 배제합니다.
- ※ 1인 가구는 추첨제로만 신청가능하며, '단독세대'와 '단독세대가 아닌 분'으로 구분됩니다.
- ※ '단독세대'란, 단독세대주이거나, 동거인이나 형제자매 등 세대구성원에 해당하지 않는 분과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를 말하며, 단독세대 신청자는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형에 한하여 신청 가능합니다.(단, 본 아파트는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형이 없으므로, 1인가구 중 단독세대는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이 불가함)
- ※ '단독세대가 아닌 분'이란, 직계존속과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 과거 1년 내에 소득세(「소득세법」 제19조 또는 제20조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함)를 납부한 분을 포함합니다.
- ※ 소득세 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 당첨자 선정방법

선정기준	①소득구분 ▶ ②거주지역 ▶ ③추첨
------	---------------------

- '①소득구분' : 아래 단계별 당첨자 선정

단계	소득구분	내용	
1단계	신생아 우선공급 (15%)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인 분	
2단계	신생아 일반공급 (5%)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초과 160% 이하인 분	
3단계	우선공급 (35%)	■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인 분	
4단계	일반공급 (15%)	■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초과 160% 이하인 분	
5단계	추첨공급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분	■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1인 가구	■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60% 이하이거나,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 각 단계별 낙첨자는 다음 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되나, 2단계 신청자 중 낙첨자는 3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4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됩니다.

- '②거주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대전광역시 1년 이상) → 기타지역 거주자(대전광역시 1년 미만,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거주자)

■ 자녀기준

- 임신·입양의 경우 입주 시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하며,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임신,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 출산의 경우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으로 판단합니다.
- ※ 임신 상태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확인합니다.
- ※ 입양의 경우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합니다.

■ 소득기준

- 소득 확인 시점

입주자모집공고일	상시근로자 근로소득 확인 시점	사업자 및 프리랜서 등 소득 확인 시점
04.01. ~ 06.30.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해당 세대의) 전전년도 소득

- 2025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공급유형		구분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신생아우선공급 및 우선공급		130% 이하	~9,793,892원	~11,442,863원	~12,125,081원	~12,878,142원	~13,631,203원	~14,384,265원
신생아일반공급 및 일반공급		130% 초과 ~160% 이하	9,793,893원~ 12,054,021원	11,442,864원~ 14,083,523원	12,125,082원~ 14,923,176원	12,878,143원~ 15,850,021원	13,631,204원~ 16,776,866원	14,384,266원~ 17,703,710원
추첨 공급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분	160% 초과, 부동산가액 충족	12,054,022원~	14,083,524원~	14,923,177원~	15,850,022원~	16,776,867원~	17,703,711원~
	1인 가구	160% 이하	~12,054,021원	~14,083,523원	~14,923,176원	~15,850,021원	~16,776,866원	~17,703,710원
		160% 초과, 부동산가액 충족	12,054,022원~	14,083,524원~	14,923,177원~	15,850,022원~	16,776,867원~	17,703,711원~

-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1인당 평균소득(579,278) x (N-8)}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 가구원수 산정 기준 :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인정하되,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포함합니다.
- ※ 월평균 소득산정 대상 : 가구원수에 포함되는 가구원 중 만19세 이상인 성년자(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 부양) 포함). 단, 세대의 실종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 월평균소득 : 소득산정 대상자별 월평균소득을 합산한 금액.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총급여액(21번) 및 소득금액증명상의 지급받은 총액(수입금액)을 근로기간(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으로 나누어 산정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소득금액을 사업기간(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으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 ※ 소득산정은 주택공급신청자의 상황(계속적인 근로자 또는 사업자, 신규취업자, 이직자, 신규사업자, 프리랜서 등)에 따라 산정방식이 달리 적용되므로 본인의 상황을 "주택청약 FAQ(국토교통부 발간)"를 확인하여야 하며, 소득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부적격처리 또는 계약포기로 간주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본인의 자격요건 및 증빙서류를 확인한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자산기준

- 부동산가액 산출기준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 및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제4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 자산 보유 기준 : '14페이지(신혼부부 특별공급 - 자산기준 - 자산보유 기준) 참고

■ 유의사항

- 주택공급신청자 본인이 직접 작성한 소득 및 조건이 본인의 기재 오류에 의한 잘못으로 판명될 경우, 당첨이 취소될 수 있으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 기타 본 입주자모집공고에 표시되지 않은 내용은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을 따릅니다.

6 일반공급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 방법

일반공급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춘 분
 - ① 대전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에 거주하는 분
 - ② 만19세 이상인 분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 부양하는 경우 한정)
 - ③ 순위별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춘 분(가입기간 6개월 이상 경과,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청약통장 자격요건

- 청약통장 예치금액(「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2])

구분	그 밖의 광역시 (대전광역시)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전용면적 85㎡ 이하	250만원	2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400만원	300만원	6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700만원	400만원	1,000만원
모든면적	1,000만원	500만원	1,500만원

※ 지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따른 거주지역을 말합니다.

※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가능합니다.

- 순위

순위	내용
1순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 경과,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 경과,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분(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한함) ■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 경과,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2순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치금액과 관계없이 청약예금·청약부금·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분

■ 당첨자 선정방법

선정기준	① 1순위 가점제	①거주지역 ▶ ②가점 ▶ ③청약통장 가입기간 ▶ ④추첨
	② 1순위 추첨제	①거주지역 ▶ ②무주택자 우선공급 ▶ ③추첨
	③ 2순위	①거주지역 ▶ ②추첨

- '①거주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대전광역시 1년 이상) → 기타지역 거주자(대전광역시 1년 미만,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거주자)
- '① 1순위 가점제 - ②가점' : '19페이지(가점제 적용기준)'을 바탕으로 주택공급신청자 본인이 작성한 '20페이지(가점 산정기준)'에 의거한 청약가점 점수를 우선순위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구분	가점제	추첨제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	40%	60%
전용면적 85㎡ 초과	-	100%

- '① 1순위 가점제 - ③청약통장 가입기간' : 가입기간은 순위기산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청약통장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하며,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전환 개월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 '② 1순위 추첨제 - ②무주택자 우선공급' : 1순위 추첨제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다음 단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단계	비율	내용
1단계	추첨제 물량의 75%	무주택세대구성원
2단계	1단계 공급 후 잔여물량	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
3단계	2단계 공급 후 잔여물량	1순위에 해당하는 분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분

■ 가점 산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가점항목	가점상한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1) 무주택기간	32	만30세미만 미혼자 또는 유주택자	0	8년이상 ~ 9년미만	18	
		1년 미만	2	9년이상 ~ 10년미만	20	
		1년이상 ~ 2년미만	4	10년이상 ~ 11년미만	22	
		2년이상 ~ 3년미만	6	11년이상 ~ 12년미만	24	
		3년이상 ~ 4년미만	8	12년이상 ~ 13년미만	26	
		4년이상 ~ 5년미만	10	13년이상 ~ 14년미만	28	
		5년이상 ~ 6년미만	12	14년이상 ~ 15년미만	30	
		6년이상 ~ 7년미만	14	15년이상	32	
(2) 부양가족수 (주택공급신청자 본인 제외)	35	0명	5	4명	25	
		1명	10	5명	30	
		2명	15	6명 이상	35	
		3명	20			
(3) 청약통장 가입기간	17	본인	6개월 미만	1	8년이상 ~ 9년미만	10
			6개월 이상 ~ 1년미만	2	9년이상 ~ 10년미만	11
			1년이상 ~ 2년미만	3	10년이상 ~ 11년미만	12
			2년이상 ~ 3년미만	4	11년이상 ~ 12년미만	13
			3년이상 ~ 4년미만	5	12년이상 ~ 13년미만	14
			4년이상 ~ 5년미만	6	13년이상 ~ 14년미만	15
			5년이상 ~ 6년미만	7	14년이상 ~ 15년미만	16
			6년이상 ~ 7년미만	8	15년이상	17
	배우자	배우자 없음 또는 배우자 통장미가입	0	1년 이상 ~ 2년 미만	2	
		1년 미만	1	2년 이상	3	

※ 본인 청약가점 점수 = (1) + (2) + (3)

※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2 나목에 따라 가점제 청약 시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에 배우자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를 합산할 수 있습니다.

■ 배우자의 통장가입기간 점수표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50% 적용)	점수
1년 미만	6개월 미만	1점
1년 이상 ~ 2년 미만	6개월 이상 ~ 1년 미만	2점
2년 이상	1년 이상	3점

-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기간 점수는 전체 가입기간의 50%에 해당하는 기간의 점수로 계산하며, 그 점수가 3점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3점까지만 인정합니다.
- 본인의 청약통장 가입기간 점수와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기간 점수 합산 시 17점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17점까지만 인정합니다.
- 청약 전 반드시 배우자 본인이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순위확인서를 발급하여 청약통장 가입기간 점수를 확인해야 하며, 향후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시 배우자의 순위확인서 및 배우자의 당첨사실 확인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하여 적격함을 증빙해야 합니다.
 - ※ 순위확인서 발급 : 청약홈→청약자격확인→청약통장→순위확인서 발급→청약통장 가입확인용→청약하고자 하는 주택명 선택
 - ※ 당첨사실 확인서 발급 : 청약홈→청약소통방→APT당첨사실 조회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배우자의 청약통장이 가입되어 있으나, 순위확인서 발급 전 배우자의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에는 순위확인서 발급이 불가하므로 적격증빙을 위하여 당첨자 발표 이후 계약 전까지 배우자의 청약통장 유지 필요합니다.

■ 유의사항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2년 이내 가점제로 당첨된 분 및 그 세대원은 가점제 청약이 불가하며, 가점제로 청약하여 당첨 시 부적격 처리됩니다.
- 1순위 가점제 당첨 시 가점제 당첨 제한자로 관리되어, 당첨자 및 그 세대원은 당첨자발표일로부터 2년간 다른 민영주택의 1순위 가점제 청약이 불가합니다.

주택소유에 관한 유의사항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공통 적용 사항)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3조 및 제53조)

검색대상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세대원 전원
주택의 범위	건물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분양권등
주택처분 기준일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처리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2의2. 분양권등에 관한 계약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2의3. 제2조제7호다목에 따른 분양권등의 매매계약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분양권등의 매매 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나. 분양권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경우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6.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자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점제의 부양가족 인정 여부 판단 시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에서 제외함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남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건물(중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해야 함) 9.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해당 목에서 정하는 주거전용면적 및 가격요건을 갖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나목3)에 해당하지 않는 것: 주거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 별표 1 제1호가목2)에 따른 가격이 1억원(수도권은 1억6천만원) 이하일 것 나. 다음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로서 별표 1 제1호가목2)에 따른 가격이 3억원(수도권은 5억원) 이하일 것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주택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 2)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3)에 해당하지 않는 것 3)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경우	조항	주택 또는 분양권등의 유형	주거전용면적	수도권	비수도권
	제53조제9호가목	아파트(도시형 생활주택 제외)	60㎡ 이하	1억 6천만원	1억원
	제53조제9호나목	단독주택	85㎡ 이하	5억원	3억원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10.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

11. 임차인으로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사람이 임차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그 주택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함
 가. 주택가격이 1억5천만원(수도권은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이 경우 주택가격의 산정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 제1호가목2)를 준용함)
 나.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12. 주택공급신청자가 임차인으로서 거주하던 임차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생애 최초로 취득한 경우로 한정한다)한 주택(「주택법 시행령」 제2조 각 호 및 제3조제1항제2호·제3호에 따른 주택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일 것
 나. 주거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그 취득가격(「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한 가격을 말한다)이 2억원(수도권은 3억원) 이하일 것
 다. 해당 주택의 취득일(제23조제4항제1호 또는 제2호 중 빠른 날을 말한다) 전날까지 1년 이상 해당 주택에 거주했을 것

7 청약 신청 및 당첨자 발표

일정 및 장소

구분	일정	장소
청약신청	2026.04.20.(월) (청약Home : 09:00~17:30 / 견본주택 : 10:00~14:00)	■ 청약Home(PC 또는 모바일앱) ■ 견본주택
	2026.04.21.(화) (청약Home : 09:00~17:30 / 은행 : 09:00~16:00)	■ 청약Home(PC 또는 모바일앱) ■ 청약통장 가입은행 창구
	2026.04.22.(수) (청약Home : 09:00~17:30 / 은행 : 09:00~16:00)	
당첨자발표	2026.04.28.(화)	■ 청약Home(PC 또는 모바일앱)

※ 은행 방문 청약은 은행 영업점별 업무 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신 후 방문하셔야 합니다.

방법 및 절차

■ 청약신청 방법 및 절차(PC·모바일)

- 경로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 → 신청유형 및 주택명 선택 → 청약자격 등 입력 →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 청약신청 완료
- 청약신청 시간 : 09:00~17:30
- ※ 17:30까지 청약신청 완료해야 하며, 청약 신청 진행 중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취소 방법 및 절차(PC·모바일)

- 경로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 → 청약취소 → 취소하고자 하는 신청내역 선택 →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 청약신청 취소 완료
- 청약신청 취소 가능시간 : 청약신청일 당일 09:00~17:30
- ※ 청약신청일 당일 17:30까지 청약신청 취소 완료해야 하며, 청약신청일 당일 17:30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청약신청 취소가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방법 및 절차(현장접수, 정보취약계층에 한함)

- 현장접수 시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없이 주택공급신청자가 기재한 사항만으로 접수를 받으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해야 합니다.
- 특별공급 : 특별공급 청약신청일 당일 10:00~14:00 사업주체 견본주택 방문을 통하여 신청가능합니다.
- 일반공급 : 일반공급 청약신청일 당일 09:00~16:00 청약통장 가입은행 창구 방문을 통하여 신청가능합니다.
- ※ 단, 은행 영업점별 업무 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공급 현장접수 시 필요서류

본인 신청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공급신청서(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 통장 ■ 예금인장 또는 본인 서명 			
제3자 대리신청 시 추가사항 (배우자 포함)	<p>※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사항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함</p>			
	<table border="1"> <tr> <td>인감증명 방식</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 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td> </tr> <tr> <td>본인서명</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 1통 ■ 청약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 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td> </tr> </table>	인감증명 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 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본인서명
인감증명 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 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본인서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 1통 ■ 청약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 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접수합니다.(단,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서류 제출)
-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산일 산정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해야 합니다.
- ※ 주택공급신청서의 단말기 「(전산)인지란」의 인자된 내용과 신청내용을 확인해야 하며, 동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당일 내로 공급신청서를 접수한 영업점에 정정 신청해야 합니다.
- ※ 본인 및 배우자가 인장 날인 없이 신청인[서명]으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한 경우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며, 주택공급신청서의 [서명]은 접수받은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해야 합니다.

청약홈 편의서비스

마이데이터 ('청약도움e')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신청 단계에서 본인정보 제3자 제공 요구 시, 주민등록표등·초본 등 행정정보를 수신하여 세대주 여부 및 해당지역 거주기간 등 청약신청 자격요건을 확인하여 드리는 서비스입니다. ■ 서비스 이용은 선택사항이며, 통신망 연결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 및 연계 기관(정보 보유기관)의 상황 등에 따라 서비스 제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이용방법 : 청약신청 → APT → 청약홈 마이데이터('청약도움e') 서비스 팝업 → 본인정보 제3자 제공 요구
공고단지 청약연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고일 다음날부터 일반공급 청약신청 전날까지 세대원을 등록하고, 해당 세대원(성년자에 한함)의 개인정보 동의가 완료 되면, 실제 청약하고자 하는 모집공고에 대한 신청자 및 세대원의 청약자격(주택소유 및 각종 청약제한사실)을 미리 알아볼 수 있어, 부적격자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지원합니다. ■ 세대원 등록방법 : 청약자격확인 → 세대구성원 등록/조회 및 세대구성원 동의 ■ 이용방법 : 공고단지 청약연습 → 공고단지 청약연습 신청(단, 세대구성원 등록 생략 시 신청자 본인에 대해서만 청약자격 검증)
당첨자발표 서비스	<p>청약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회방법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당첨조회 ■ 조회기간 : 2026.04.28.(화) ~ 2026.05.07.(목) (10일간) ■ 조회기간(10일)이 경과하더라도 ①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 확인 또는 ②청약소통방 → APT당첨사실 조회를 통해 당첨내역 확인 가능 ■ 당첨 결과는 착오 안내 가능성이 있으므로 유선 및 서면 등 별도 통지하지 않습니다.
	<p>문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공일시 : 2026.04.28.(화) 08:0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제공대상 : 청약 신청 시 휴대폰 번호를 등록하고 SMS 수신에 동의한 당첨(예비)자 ※ 당첨자 발표 안내 문자에는 스미싱 등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별도의 링크(URL)를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의 링크(URL) 또는 전화번호는 절대 누르지 않는 등 유사한 스미싱 문자에 대해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통신 환경 등에 따라 문자가 정상적으로 수신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당첨여부는 반드시 청약홈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8 자격확인 서류 제출

일정 및 장소

※ 당첨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체결일 이전에 사업주체가 정한 기간에 신청 자격별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견본주택을 방문하여 청약 내역과 대조, 검증하여 적격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26.05.02.(토)~ 2026.05.06.(수) 10:00~17:00 특별공급, 일반공급 당첨자 (예비입주자는 별도 안내 예정)
장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견본주택(대전광역시 유성구 용계동 667-6번지)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추후 서류 제출 방법 및 일정이 변경될 수도 있으며, 변경시 개별 통지 예정입니다.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는 관련 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계약 체결할 수 없습니다. 모든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서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신청자격에 맞는 제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 등으로 신청내용과 제출서류가 상이할 경우 별도의 보완자료 등으로 당첨자격을 소명하여야 하며, 소명하지 못할 경우 부적격 처리될 수 있습니다.

당첨자 제출 서류(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구분	해당구분		제출서류	발급기준	유의사항
	필수	해당자			
공동서류 (기관추천 특별공급 포함)	○		신분증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 여권 : 2020.12.21. 이후 신규 발급분은 여권정보증명서 추가 ※ 모바일 신분증 불가(실물 지참 필수)
	○		주민등록표등본(전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하여 발급(주소변동사항 제외)
	○		주민등록표초본(전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민등록번호, 과거 주소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 하여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본인 및 세대원 성명, 주민등록번호 뒷자리포함 "상세"로 발급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록대조일을 본인 생년월일~입주자모집공고일로,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1961년 이전 출생자는 1961.1.1.부터) 기관추천 특별공급 제외
		○	청약통장순위(가입)확인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약Home 홈페이지에서 청약통장순위(가입)확인서 발급(장애인, 국가유공자 제외) 견본주택 방문청약 접수시(인터넷 청약의 경우 미제출)
		○	복무확인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자격으로 신청하는 경우(10년 이상 군복무기간 명시)
		○	기존주택 처분 관련 서약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에 한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5조의3제5항에 따라 기존 소유 주택의 처분을 조건으로 특별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사람 	
	○	주민등록표등본(전체)	배우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민등록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상기 등본발급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바람) 	
<p>※ 계약 구비서류(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등)는 접수 및 보관하지 않습니다. 계약체결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p>					

구분	해당구분		제출서류	발급기준	유의사항
	필수	해당자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	주민등록표초본(전체)	피부양 직계존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과거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하여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혼가정의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주택공급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한부모가족증명서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공급신청자가 성평등가족부의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라 한부모 가족으로 지정된 지 5년이 경과된 경우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19세 이전에 혼인하여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피부양 직계비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 18세 이상 만 19세 미만의 직계비속을 "미성년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임신진단서 또는 출생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신한 태아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 ※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서류에 한함(담당 의사명, 출산예정일, 의료기관 등록번호 및 연락처 및 직인 날인 원본)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양한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
신혼부부 특별공급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혼인신고일 확인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본인 및 19세이상 세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공급신청자 및 만19세이상 세대원(분리된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세대원 포함) 전원 제출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함(발급처:국민건강보험공단/FAX 수신 문서 가능)
	○		소득증빙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공급신청자 및 만19세이상 세대원(분리된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세대원 포함) 전원 제출 ■ 아래 '소득증빙서류' 참고 ※ FAX 수신문서 등 복사본 불가, 직인이 날인된 원본 서류 필수
	○		주민등록표초본(전체)	피부양 직계존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산정시 당첨자의 가구원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주민등록번호, 과거 주소변동 사항(1년이상),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하여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혼가정의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주택공급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임신진단서 또는 출생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신한 태아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 ※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서류에 한함(담당 의사명, 출산예정일, 의료기관 등록번호 및 연락처 및 직인 날인 원본)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양한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		주민등록표초본(전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자 ■ 아래 '자산증빙서류' 참고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산정시 당첨자의 가구원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주민등록번호, 과거 주소변동 사항(3년이상),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하여 발급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피부양 직계존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계 확인 및 피부양 직계존속의 배우자 확인 ■ 본인 및 세대원 성명, 주민등록번호 뒷자리포함 "상세"로 발급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여부 확인 ■ 기록대조일을 본인 생년월일~입주자모집공고일로,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1961년 이전 출생자는 1961.1.1.부터)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진료개시일, 요양기관명 및 요양기관 연락처에 한정 / 과거 3년간의 내역)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 30세 이전에 혼인하여 혼인신고일로부터 무주택기간 점수를 산정한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혼가정의 자녀를 부양가족수에 포함한 경우(주택공급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주민등록표초본(전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30세 이상 미혼인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 주민등록번호, 과거 주소변동 사항(1년이상),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하여 발급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 18세 이상의 미혼인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피부양 직계비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0세 미만 : 입주자모집공고 기준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여부 확인 ■ 30세 이상 : 입주자모집공고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여부 확인 ■ 기록대조일을 본인 생년월일~입주자모집공고일로,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 30세 이상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진료개시일, 요양기관명 및 요양기관 연락처에 한정 / 과거 1년간의 내역)

구분	해당구분		제출서류	발급기준	유의사항
	필수	해당자			
생애최초 특별공급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본인 및 19세이상 세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공급신청자 및 만19세이상 세대원(분리된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세대원 포함) 전원 제출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함(발급처:국민건강보험공단/FAX 수신 문서 가능)
	○		소득증빙서류	본인 및 19세이상 세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공급신청자 및 만19세이상 세대원(분리된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세대원 포함) 전원 제출 ■ 아래 '소득증빙서류' 참고 ※ FAX 수신문서 등 복사본 불가, 직인이 날인된 원본 서류 필수
	○		소득세 납부 입증서류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대주 본인의 소득세 납부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 5개년도 서류(아래 '소득세 납부 입증서류' 참고)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혼인신고일 확인
	○		주민등록표초본(전체)	피부양 직계존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산정시 당첨자의 가구원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주민등록번호, 과거 주소변동 사항(1년이상),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하여 발급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피부양 직계비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 18세 이상의 미혼자녀를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임신진단서 또는 출생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신한 태아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 ※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서류에 한함(담당 의사명, 출산예정일, 의료기관 등록번호 및 연락처 및 직인 날인 원본)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본인 및 세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양한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
일반공급	○		자산증빙서류	본인 및 세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자 ■ 아래 '자산증빙서류' 참고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30세 이전에 혼인하여 혼인신고일로부터 무주택기간 점수를 산정한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혼가정의 자녀를 부양가족수에 포함한 경우(주택공급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주민등록표초본(전체)	본인 및 세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배우자 직계존속 포함) ■ 주민등록번호, 과거 주소변동 사항(3년이상),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하여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본인 및 세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계 확인 및 피부양 직계존속의 배우자 확인 ■ 본인 및 세대원 성명, 주민등록번호 뒷자리포함 "상세"로 발급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피부양 직계존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여부 확인 ■ 기록대조일을 본인 생년월일~입주자모집공고일로,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1961년 이전 출생자는 1961.1.1.부터)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본인 및 세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배우자 직계존속 포함)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진료개시일, 요양기관명 및 요양기관 연락처에 한정 / 과거 3년간의 내역)
	○		주민등록표초본(전체)	본인 및 세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30세 이상 미혼인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 주민등록번호, 과거 주소변동 사항(1년이상),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하여 발급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 18세 이상의 미혼인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피부양 직계비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0세미만 : 입주자모집공고 기준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여부 확인 ■ 30세이상 : 입주자모집공고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여부 확인 ■ 기록대조일을 본인 생년월일~입주자모집공고일로,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본인 및 세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30세 이상 미혼인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진료개시일, 요양기관명 및 요양기관 연락처에 한정 / 과거 1년간의 내역)
	○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순위확인서	배우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점제 신청자 중 배우자의 청약통장가입기간 점수를 산입(1~3점)한 경우, 아래 경로를 통해 서류 발급 ※청약홈 : 청약홈→청약자격확인→청약통장→순위확인서 발급→청약통장 가입확인용→청약하고자 하는 주택명 선택 ※청약통장 가입은행:창구 방문→청약통장 가입확인용 순위확인서 발급
○		당첨사실 확인서	배우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점제 신청자 중 배우자의 청약통장가입기간 점수를 산입(1~3점)한 경우, 아래 경로를 통해 서류 발급 ※청약홈 : 청약홈→청약소통방→APT당첨사실 조회 	

구분	해당구분		제출서류	발급기준	유의사항
	필수	해당자			
적격여부 소명 필요자		○	주택 및 분양권등 소유여부 증명서류	해당 주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 주택 :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건축물대장등본 ■ 무허가 주택 : 관할 지자체에서 발급한 무허가 건물임을 확인하는 공문 ■ 폐가, 멸실 주택 : 건축물철거명실신고서 ■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당첨사실 소명 서류	해당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기관의 당첨사실 무효확인서 등
		○	단신부임 입증 서류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기업 및 기관 소속 해외 주재원 및 출장자 : 파견 및 출장명령서 등 ■ 해외 취업자 및 사업체 운영자 : 현지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사업, 근로 관련 서류, 취업, 사업비자 발급내역 등 ■ 근로자가 아닌 경우 : ①비자발급내역, ②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 ※ 유학, 연수, 관광, 단순체류자의 경우 생업사정을 인정할 수 없으며, 생업관련 증빙서류 불가한시 생업사정 불인정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배우자, 세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록대조일을 본인 생년월일~입주자모집공고일로,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비자발급내역 및 재학증명서	해당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권 분실 및 재발급으로 체류국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 비자발급내역, 재학증명서 등 체류국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통해 소명을 하여야 하며, 세대원이 주택공급신청자와 동일한 국가에 체류하지 않았다는 사실(국외 체류기간 연속 90일 미만)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단신부임 인정 불가 	
대리인 신청시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인 발급 인감증명서에 한함(용도 : 아파트 서류접수 위임용)
	○		신분증	대리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국내거소사실신고증(재외동포), 외국인등록증(외국인)

- ※ 상기 제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상세 발급분에 한하며, 주택공급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 건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 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주택공급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여부, 세대주와의 관계 확인 등을 위해 모두 표기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라며, 서류발급 시 필히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기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 해당 직장에서 발급되는 모든 서류는 반드시 직인 날인 필요합니다.
-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인(배우자, 직계 존·비속 포함)으로 간주합니다.
- ※ 상기 서류 외 당첨자격 확인을 위하여 사업주체에서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미 제출 시 자격 확인 불가로 계약 체결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소득증빙서류(신혼부부특별공급, 생애최초특별공급)

구분	제출서류	발급처	
근로자	① 재직증명서 ②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 전년도 감중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매월신고 납부대상자확인'으로 발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직장 ■ 세무서 	
	① 재직증명서 ② 금년도 월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또는 감중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③ 직장의 사업자등록증 ※ 근로기간이 1개월을 경과하지 못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부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과 동일한 직장의 동일 직급 동일 호봉인 자의 전년도 근로자원천징수영수증과 재직증명서를 제출 받아 월평균소득을 추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직장 	
	① 재직증명서 ②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직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 자(직장가입자만)	① 재직증명서 ②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직장 ■ 세무서
자영업자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면세사업자	① 전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② 사업자등록증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무서
	신규사업자	①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또는 공고일 이전 최근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부분) ② 사업자등록증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연금공단 ■ 세무서
	법인대표자	① 전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② 전전년도 제무재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직장 ■ 세무서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① 전전년도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② 전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간이지급명세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직장 ■ 세무서 	

구분		제출서류	발급처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주민센터
일용직 근로자		①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	■ 해당직장 ■ 국민연금공단
무직자	전년도 또는 올해 소득 있는 현재 무직자	① 전년도 1월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 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	■ 세무서
	2024.01.01.부터 현재까지 무직자	① 사실증명서(신고사실없음)	■ 세무서

-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 상기 모든 서류는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 재직증명서 제출 대상자 중 소득산정 기간중에 휴직을 했던 분은 휴직 기간 및 휴직 유형이 표시되도록 재직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 ※ 모든 제증명 서류는 원본을 제출해야 하며, 사본 및 FAX수신 문서는 접수하지 않습니다.(예외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 ※ 제출한 서류에 대해 위·변조 검증을 실시하며, 제출서류의 위·변조 확인 시 수사 기관에 고발 조치 될 수 있습니다.

■ 자산증빙서류(신혼부부특별공급, 생애최초특별공급)

구분		제출서류	발급처
부동산 소유현황이 있는 경우	필수	① 부동산 소유현황(세대원별 발급,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② 등기사항전부증명서(부동산 소유현황에 표시된 해당 부동산 모두에 대한 서류 발급) ③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전국단위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 ■ 행정복지센터
	해당자	① 공동(개별)주택가격 확인서(소유 부동산이 건축물대장상 주택인 경우) ② 개별공시지가확인서(소유 부동산이 토지, 단독·공동주택 제외한 일반건축물(상가,오피스텔 등)인 경우) ③ 건축물시가표준액 조회결과(소유 부동산이 건축물대장상 주택 외 건축물(상가,오피스텔 등)인 경우) - 서울시 : ETAX 이용안내→조회/발급→주택 외 건물 시가표준액조회→조회결과 인쇄 제출 - 서울시 외 : 위택스→지방세정보→시가표준액조회→건축물시가표준액→조회결과 인쇄 제출	■ 행정복지센터 ■ 이택스 (etax.seoul.go.kr) ■ 위택스 (www.wetax.co.kr)
	해당자	① 농지대장 ② 축산업 허가증 ③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농지법 및 초지법 등에 따라 토지가액에서 제외되는 경우	■ 행정복지센터 ■ 지자체 축산과 ■ 토지이음
부동산 소유현황이 없는 경우		① 부동산 소유현황(세대원별 발급,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열람/발급→부동산→소유현황 열람→조회결과 인쇄·제출 - "신청하신 성명(명칭), (주민)등록번호로는 부동산소유현황 조회내역이 없습니다." 내용 화면 인쇄 ②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전국단위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 행정복지센터

- ※ 신혼부부 특별공급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에서 추첨제로 청약하고 자산기준 충족을 입증해야 하는 신청자는 상기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 ※ 자산보유기준(3.31억원) 산정 시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보유한 주택 또한 대상이 됩니다.
- ※ 부동산 소유현황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를 하여 전체 주민등록번호가 표시되게 발급하여야 하며, 세대원(미성년자 포함) 전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소득세 납부 입증서류(생애최초특별공급)

구분		제출서류	발급처
공통	과거 5개년도 소득세 납부 입증서류	① 종합소득세 납부자 : 소득금액증명, 납부내역증명, 납세증명서(국세완납증명) ※ 결정세액이 '0' 또는 (-)인 경우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서 추가 제출 ②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직인날인)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직인날인) ③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	■ 해당직장 ■ 세무서
	근로자	① 재직증명서(직인날인)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해당직장 ■ 세무서 ■ 국민건강보험공단
자영업자	① 사업자등록증명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과거 1년 이내 소득세를 납부한자	① 원천징수영수증(직인 날인) 또는 소득금액증명(납부내역증명 포함) ※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납부분에 한함 ※ 결정세액이 '0' 또는 (-)인 경우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서 추가 제출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 해당 소득세 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세액공제·세액감면 등으로 납부 의무액이 없는 경우 포함합니다.
- ※ 과거 5개년도 납부내역은 통산 5년의 납부실적을 의미합니다.(적용예 : 2020, 2021, 2023, 2024, 2025년에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 가능)

9 계약 체결

일정 및 장소

구분	일정	장소
계약 체결	2026.05.12.(화) ~ 05.14.(목) (3일간, 10:00 ~ 17:00)	건본주택(대전광역시 유성구 용계동 667-6)

- ※ 당첨자는 당첨 동호수의 공급금액 확인 후 지정된 계좌로 계약금을 납부하고 구비서류를 준비하시어 반드시 지정된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청약제한사항 등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 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부적격자는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자의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 계약 체결 이후라도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하지 못하면 계약은 취소됩니다.

구비사항

구분	해당구분		구비사항	발급기준	유의사항
	필수	해당자			
본인 계약시	○		계약금 입금 증빙내역	본인	■ 계약금 무통장 입금 영수증 또는 입금 확인증
	○		신분증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 여권 : 2020.12.21. 이후 신규 발급분은 여권정보증명서 추가 ※ 모바일 신분증 불가(실물 지참 필수)
	○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 본인발급분, 아파트계약용,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대체 가능
	○		정부수입인지(종이문서용)		■ 「인지세법」 및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발급 후 사본 제출
	○		주택취득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 관계법령에 의거 작성 및 관할기관 제출서류
대리인 계약시	○		대리인 신분증	대리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상기 유의사항 참고)
	○		계약자 인감증명서	본인	■ 계약자의 인감증명서(아파트계약 위임용/본인발급분) 및 인감도장

-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인(배우자, 직계존·비속 포함)으로 간주합니다.
- ※ 상기 모든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1부(또는 국내거소사실 증명서),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사본 1부(또는 외국인등록사실 증명서 1통)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 정부수입인지는 「인지세법」에 따라 사업주체와 각각 50%씩 연대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사업주체 부담분의 수입인지는 입주 시 별도 예정입니다.

납부계좌

구분	금융기관	계좌	예금주
분양대금	하나은행	계약금	교보자산신탁(주)
		2차 및 3차 계약금 중도금, 잔금	
		231-910057-08504	
		세대별 가상계좌 부여	

- ※ 상기 계좌로 납부되지 아니한 분양대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 건본주택에서 현금 또는 수표 수납이 불가합니다.
- ※ '분양대금', '발코니확장', '추가선택품목' 납부계좌가 상이하므로 반드시 구분하여 입금하여야 하며, 착오 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 시 사업주체는 책임지지 않음을 분명히 인지하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계약금 계좌는 모계좌로서 중도금, 잔금부터는 세대별로 부여되는 가상계좌에 입금하시면 상기 모계좌로 이체되어 관리되며, 세대별로 계좌번호가 상이하므로 입금 시 유의 바랍니다.
- ※ 지정된 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부일에 해당 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라며, 사업주체에서는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 입금 시 반드시 동호수 및 계약자명을 기재하여야 합니다.(101동 101호 : 서명란에 "1010101홍길동"이라고 정확히 기재)

- ※ 타인 명의 등 계약금 납부 주체가 당첨자와 상이하거나 불분명하게 입금된 경우에는 계약금 미납 및 계약 미체결로 처리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제반 문제에 대하여 사업주체에서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 입금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소명 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은 1개월 이상 소요됩니다.

정부수입인지(종이문서용)

- 아파트 공급계약서는 「인지세법」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인지세 납부 대상이 되며, 공급계약 체결 시 분양 계약자는 과세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정부수입인지 형태로 연대하여 균등 납부하기로 합니다. 또한 분양계약자가 부담해야 하는 인지세를 납부 하지 않거나 과소 납부, 인지 분실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 납부세액 : 부동산 거래계약서의 실지거래가격을 기재금액으로 하여 세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최초 분양계약(분양권 전매 등 해당 없음)에 한해서 사업주체와 연대하여 균등 납부합니다.

기재금액	납부세액	계약자	사업주체	비고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15만원	7만5천원	7만5천원	
10억초과	35만원	17만5천원	17만5천원	

- 납부방법 : 전자수입인지 사이트(www.e-revenuestamp.or.kr)에서 종이 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구입 후 출력하거나, 우체국 및 은행에서 구입하여 과세문서에 첨부합니다.
 - ※ 「국세기본법」제47조의4 납부지연 가산세 납부 중 「인지세법」제8조제1항에 따른 문서 중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에 대한 납부지연 가산세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부동산 등기(최초 분양계약자와 최종 매수자의 인지세 납부의무이행 확인)와는 무관하게 중간 전매도 인지세법 따른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 ※ 인지세 납부 등과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 자료실에서 확인하시거나 세무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부적격 청약, 공급질서 교란행위, 통장매매, 위장전입 등의 사유로 향후 계약이 취소될 경우 사업주체에 인지세 환불을 요구할 수 없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 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된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당첨 취소 및 고발 조치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주민등록법령 위반 및 청약관련 예금 등을 타인 명의로 가입하거나 가입자의 청약관련 예금 등을 사실상 양도받아 공급신청 및 계약 시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계약은 취소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할 뿐만 아니라 부정당첨자로 관리합니다.
- 사업주체에서 당첨자에 한하여 세대주, 거주지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와 다르게 당첨되어 부적격자로 최종 확인되는 경우 공급계약은 취소됩니다.
- 부적격으로 통보된 자는 계약체결이 불가하며, 부적격 당첨 소명기간 내에 소명할 경우에 한하여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 계약신청 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된 경우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기체결된 계약은 취소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당첨자로 관리하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인에게 귀속됩니다.
- 계약 이후 주소 또는 인적사항 등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 내용을 반드시 당사(사업주체)에 즉시 서면(주민등록표등본 포함) 통보하시기 바라며, 미통보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음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부동산 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인지세 등 제세공과금은 계약자의 부담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외국인(법인·단체포함)이 국내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 가. 국내 거주 외국인이 주거목적의 국내 주택 구입 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외국인 부동산취득신고를 한다. (단, 공급계약이나, 매매는 부동산거래신고로 갈음하고 증여, 교환 등만 해당함)
 - 나. 외국인이 상속 또는 경매 등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외국인 부동산등 취득신고를 한다.
 - 다. 대한민국에서 외국으로 국적이 변경된 경우 외국인으로 변경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외국인 부동산등 계속보유 신고를 한다.
 - 라. 국내 미거주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 취득 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신고, 외국인투자기업등록을 마치고 외국인 부동산등 취득신고를 한 후 국내부동산을 취득하여야 한다.
- 분양계약 체결 후 연 2회(반기 1회, 단 최초 개최는 착공일로부터 1년 이내) 이상 입주예정자("계약자"를 말함)를 대상으로 공사 전반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설명회는 원칙적으로 공사 현장에서 진행하되, 공사의 진행 상황, 안전관리 여건, 기상 조건,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설명회 개최 장소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통지는 설명회 예정일 10일 전까지 우편으로 하며, 설명회 당일 미참석자에 대한 별도의 설명회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 기타 계약조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9조에 준합니다.

부적격자의 명단관리 등(「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8조)

- 사업주체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2조제3항 및 제57조제8항에 따른 부적격자가 소명기간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고 제58조 제4항에도 해당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7일 내에 그 명단을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8조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자의 명단을 당첨자명단에서 삭제하는 등 전산관리하고, 제57조제7항에 따라 사업주체에게 전산검색 결과를 통보할 때 제58조제3항에 해당하는지를 표시하여 통보하여야 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8조제1항에 당첨이 취소된 자는 공급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일부터 아래에 해당하는 지역 및 기간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사전청약 및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한다)의 입주자(사전당첨자를 포함한다)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①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 1년 ② 수도권 외의 지역 : 6개월 ③ 위촉지역 : 3개월
- 사업주체는 부적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첨자로 봅니다. 다만, 제57조제7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① 같은 순위(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순위를 말함. 이하 이항에서 같다)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자
 - ②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제52조제3항에 따른 소명기간에 재산정한 가점제 점수(가점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공급 순차별 자격(순차별로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이 해당 순위의 당첨자로 선정되기 위한 가점제 점수 또는 자격 이상에 해당하는 자

이중당첨자 및 부적격자의 처리 및 계약취소에 관한 사항(「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1조)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2조에 따라 당첨자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 신청 시 제출서류 확인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된 자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즉시 통보하며, 통보한 날로부터 7일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계약체결 후이라도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 입주자 선정 대상에서 제외되고, 공급계약을 취소하며 부적격 당첨자로 관리합니다.
 - ① 청약가점항목(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수, 주택소유현황 등)을 허위 또는 착오 기재하여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
 - ② 특별공급 당첨자 중 과거 다른 주택에 특별공급 자격으로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특례 제외)
 - ※ 주택소유여부 판단 시 당첨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전원 포함)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의 주택소유사실을 포함하며, 특별공급 및 1순위자(분리세대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는 국토교통부에 무주택 여부를 검색하여 부적격자를 판명합니다.

대출안내

- 본 아파트의 중도금 대출에 대한 이자는 '중도금 이자후불제' 조건으로 용자알선을 시행할 예정입니다.(단 정부정책 및 금융권 사정 등의 사유로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본 아파트는 공급대금의 60%(중도금) 범위 내에서 대출신청이 가능하며, 대출신청 시 대출취급기관 등에 의거 공급대금의 10%(계약금 1차, 2차 및 3차) 완납 이후 중도금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 계약자는 법률의 변경 및 금융관련 정부정책(주택담보대출의 제한 등), 금융시장 변화 또는 대출 금융기관의 규제 등에 따라 사업주체의 중도금 대출 알선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공급대금은 계약자 본인 책임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중도금 대출 금융기관의 알선은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의무사항이 아니며, 계약자에 대한 편의제공에 불과함)
- 본 아파트는 사업주체가 알선한 금융기관을 통해 중도금 대출 신청이 가능할 경우에도, 금융관련 정부정책, 대출 금융기관의 여신관리규정, 집단대출 보증기관의 관리규정 등으로 대출조건이 각 세대별, 각 개인별로 상이하거나, 최종적으로 중도금 대출 실행이 불가할 수 있음을 인지하기 바라며 이에 따른 중도금 대출 불가 및 대출한도 축소 등으로 인한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고 이와 관련된 책임을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부담하지 않습니다.(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경우 대출 가능 여부 반드시 확인)
- 아파트 공급계약이 계약자의 사정이나 귀책사유로 인해 해제가 될 경우 계약자는 위약금과 별도로 사업주체가 우선 납부한 중도금 대출이자 전액을 사업주체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 적격대출 시 중도금 대출 약정 기간은 중도금 대출 최초 실행일로부터 대출금융기관에서 정한 날까지이며 대출이자자는 입주지정기간 최초일 전일까지 사업주체가 대신 납부하되 계약자는 입주 시 사업주체에서 지정한 기일 내에 중도금 대출 상환 및 중도금 대출 대납이자 등을 일시 납부하여야 하며(납부하지 않을 경우 입주가 거부될 수 있으며, 납부지연으로 연체이자 등을 부담하여야 함), 입주지정기간 최초일부터 발생하는 대출이자에 대해서는 계약자 본인이 해당 대출취급기관에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적격대출 시 대출 금융기관과의 중도금 대출협약 등에 의거하여 사업주체는 대출 금융기관에 중도금 대출을 위한 분양계약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대출 취급수수료(집단대출 보증기관의 보증수수료 등), 인지대 등 제반 경비는 금융기관 등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 중도금 대출 기간 이내라도 계약자의 금융 신용불량 등 결격사유가 발생하여 대출 금융기관의 중도금 대출중단 요구로 공급대금이 납부되지 않을 경우 분양계약해지를 할 수 있으며, 이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잘못이 아닙니다.

-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알선하지 않은 금융기관으로부터 계약자가 직접 대출받은 경우 그에 대한 이자는 계약자가 해당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중도금 이자 조건에 대한 요구를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게 할 수 없습니다.
- 적격대출 관련 중도금 대출 신청 관련 안내는 사업주체 의무사항이 아니며 “개인사유로 인한 대출 미신청” 또는 “금융거래 신용불량자 등” 계약자의 사정에 의한 대출 불가 등으로 발생하는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사업주체가 알선한 대출의 대출 기간 만료 시(준공 후 미입주 등) 금융기관의 대출기간 연장 및 공정률에 따른 중도금 납부 일자의 변경에 대해 별도의 절차 없이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분양권 전매 요청 시 해당 주택의 사업주체 및 대출 취급기관은 양수인의 신용등급 등의 제반조건을 확인하기 위하여 추가 증빙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며, 대출취급기관 또는 사업주체의 판단에 따라 양수인이 신용등급 등의 제반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분양권 전매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대출기관이 아니므로 분양상담 시 대출여부에 대해 확정할 수 없으며, 추후 금융기관 심사를 통하여 대출여부가 결정됩니다. 이에 고객의 대출비용 축소 또는 대출 불가에 대하여 분양상담(전화 상담 포함) 내용을 근거로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대출 책임을 요구할 수 없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분양권 전매

- 본 아파트는 「주택법」에 의거 당첨자 발표일부터 6개월 간 전매가 금지됩니다.
- 분양권 전매는 계약자가 사업주체에 대한 채무를 모두 이행한 경우에 한하며, 분양권 양수인은 계약자의 본 아파트 공급계약 과정에 체결한 약정에 대하여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합니다. 또한 분양권 전매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민형사상, 세무상 기타 제반 법적 문제에 대하여 계약자 및 분양권 양수인이 책임집니다. (전매는 정부의 부동산대책 및 관계법령의 제·개정 등에 의해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 계약자는 분양권 전매 전까지 채무관계(미납대금, 연체료 등)를 반드시 이행하여야 하며, 해당 목적물에 가압류, 압류, 추심명령 등 제한채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이를 해제 또는 소멸시켜야 분양권 전매가 가능합니다.
-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알선한 중도금 대출 취급기관으로부터 위 표시 부동산을 대상으로 대출받은 자는 전매 시 해당 대출취급기관이 발행한 전매 당사자간의 대출 승계 증거서류를 사업주체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그러지 아니할 경우에는 대출금을 상환한 후 상환영수증을 즉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추후 분양권 전매 요청 시 당해 주택의 사업주체 및 대출취급기관은 양수자의 신용등급 등의 제반조건을 확인하기 위하여 추가 증빙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며 대출취급기관 또는 사업주체의 판단에 따라, 양수자가 신용등급 등의 제반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분양권 전매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전매 당사자 간 작성(합의)한 부동산 매매계약서 상 분양권 전매 금액이 최초 체결한 분양계약 상의 공급대금과 상이하더라도, 이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는 무관하며 양도인 및 양수인이 책임집니다.
- 계약자 또는 분양권 양수인이 외국국적을 가지고 있는 개인이나 법인일 경우에 계약을 하거나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따른 신고 등 제한사항이 있을 수 있으며, 이를 해태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계약자가 부담합니다.
- 불법청약 등 최초 계약자의 불법행위로 인해 당 분양계약이 취소되더라도 분양권 매수자는 이에 따른 피해를 보호받을 수 없음을 분명히 인지하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부동산 등기(최초 분양계약자와 최종 매수자의 인지세 납부 의무이행 확인)와는 무관하게 중간 전매도 인지세법에 따른 납세의무 종이 문서용 전자수입인지 구매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 분양권 전매로 인한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등 세금 신고는 자진 신고해야 하며, 신고 미이행에 따른 불이익은 사업주체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아파트 공급금액의 미납금액이 있거나 잔금의 90% 이상 납부 시 취득으로 간주되어 분양권 전매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 분양권 전매(증여, 상속 포함) 절차 및 일정은 추후 별도 안내 예정입니다.

10 발코니확장 및 추가선택품목

발코니확장

■ 발코니확장 금액

(단위 : 원 / 부가가치세 포함)

타입(약식표기)	공급금액	계약금(10%)	중도금(10%)	잔금(80%)
		계약시	2027.02.15	입주시
84A	19,400,000	1,940,000	1,940,000	15,520,000
84B	23,400,000	2,340,000	2,340,000	18,720,000
84C	18,700,000	1,870,000	1,870,000	14,960,000
84D	21,400,000	2,140,000	2,140,000	17,120,000
84E	19,900,000	1,990,000	1,990,000	15,920,000
99A	24,400,000	2,440,000	2,440,000	19,520,000
99B	26,400,000	2,640,000	2,640,000	21,120,000

■ 발코니확장 유의사항

- 발코니는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확장 설치하였으며, 발코니확장은 세대별로 택하여 계약하는 별도 계약 품목으로 분양가에는 미포함되어 있으며, 발코니확장이 필요한 경우 공동주택 공급계약 시 별도의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 상기 발코니확장비는 일괄확장을 전제로 산정한 금액이며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확장 공간 제외 발코니의 위치는 건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확장 부위 표기의 '거실', '침실' 등의 표현은 카탈로그 기준이며, 계약관련 선택사항 및 유의사항을 계약자가 직접 확인하시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확장비는 공동주택 공급금액과 별도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며, 발코니확장에 따른 기존 설치품목의 미설치로 인한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품목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입니다.(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이 미포함 되어 있으며, 추후 분양계약자가 과세관청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자재조달에 따른 계약 및 세대 내부공사 등 공사여건에 의해 발코니확장 계약 가능 기한 이후에는 계약체결이 불가합니다.
- 단위세대 설계 당시 소비자의 성향 등을 고려해 발코니확장형으로 설계 및 전시하였으며, 발코니확장을 선택하지 않을 경우 공간이 협소하고 단위세대의 공간 활용도가 저하될 수 있음을 계약 전 충분히 인지하고 확인하여야 합니다.
- 사업주체에서 시행하는 발코니확장은 건축법에 의거 적법하게 설계되었으며, 사용승인 후 개별적으로 확장 시에는 「건축법 시행령」 및 「공동주택관리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발코니 대피공간의 구조변경 및 설치기준을 준수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관리주체에 반드시 신고 확인 후 설치하여야 합니다.
- 발코니에는 드레인 및 선홍통이 설치되는 발코니와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가 있으며, 위치와 개수는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으며, 드레인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 내에서는 물을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 각 세대의 발코니에 필요시 선홍통 및 드레인 등이 시공될 수 있으며, 발코니확장 시 비확장 세대의 발코니 사용 및 우천 시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확장 시 실내습도 등 생활습관에 따라 발코니 새시 및 유리, 기타 확장부위에 결로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니 입주자께서 환기 등으로 예방(주기적인 실내 환기는 결로 발생 예방에 큰 도움 됨)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하자 발생 시 하자보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발코니확장에 따른 이중창호, 단열재 및 마감재의 추가 설치로 발코니 실사용 면적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 발코니확장 시 발코니확장면 평면에서 비확장으로 남아있는 발코니 새시는 단창으로 설치되며, 해당 공간은 결로 방지용 단열재가 설치되거나 결로 및 곰팡이 등의 사용상 하자발생 시 하자보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발코니확장 시에는 확장된 발코니 일부 벽체의 단열 및 결로 방지를 위하여 확장부위 일부 벽체 및 천장이 카탈로그 그림보다 다소 두꺼워질 수 있으며, 발코니확장 세대는 인접세대 또는 상부세대가 비확장일 경우와 세대내 비확장 발코니에 면하는 경우 추가 단열재 시공으로 인하여 침실 및 거실 발코니 벽체부위에 단차가 생길 수 있음을 분명히 인지하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확장 세대의 상부세대가 비확장일 경우 단열재 추가 설치 등으로 인한 천장 및 벽체 돌출, 우물천장 사이즈 감소, 조명의 위치와 상태가 변경될 수 있음을 분명히 인지하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확장 세대의 상부세대가 비확장일 경우 상부세대의 배관으로 인하여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을 분명히 인지하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기본형 세대(비 확장형 세대) 선택 시 냉매배관, 조명기구 및 배전기구의 TYPE, 배치 및 설치는 확장형 세대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발코니 개별 확장세대의 경우 난방 장비용량 증설에 따른 비용 및 난방부담금은 입주시점에 아파트 관리주체와 협의하여 추가로 부담하여야 합니다.

- 입주 후 발코니확장을 개별 시공함으로써 소음, 진동, 분진 등을 초래하여 타 입주자에게 불편이 있을 수 있으나,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은 사업주체와 무관하며, 입주 후 발코니확장 개별 시공에 따른 관리비 등이 과다하게 부과될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확장 세대는 평면 구조상의 문제로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확장 및 추가선택품목은 본 사업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 가입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해당 금액은 분양보증으로 보호되지 않습니다.
- 발코니확장과 추가선택품목에 따라 기본설치공사분, 기본품목의 미시공, 미설치로 인한 감소비용과 추가 확장공사, 선택품목의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입니다.
- 발코니확장 시 기본제공품목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선택품목

■ 추가선택품목(플러스옵션)

(단위 : 원 / 부가가치세 포함)

구분	84A	84B	84C	84D	84E	99A	99B
조명 및 실링팬 Style up + 주방 Style up	42,011,000	41,414,000	42,644,000	42,076,000	42,881,000	49,425,000	49,894,000
조명 및 실링팬 Style up	8,823,000	9,030,000	10,374,000	8,798,000	8,798,000	9,285,000	9,300,000
주방 Style up	33,492,000	32,686,000	32,270,000	33,582,000	34,387,000	40,444,000	40,898,000
개별							
욕실 고급수전/도기	2,365,000	2,365,000	2,365,000	2,365,000	2,365,000	2,151,000	2,151,000
침실2 붙박이장	-	-	-	-	-	-	-
침실3 붙박이장	1,339,000	1,339,000	1,339,000	1,339,000	1,339,000	1,339,000	1,339,000
침실4 붙박이장	-	-	-	-	-	-	-
욕실 복합 환풍기	1,344,000	1,344,000	1,344,000	1,344,000	1,344,000	1,344,000	1,344,000
쿱탑(디오스 전기 인덕션)	1,253,000	1,253,000	1,253,000	1,253,000	1,253,000	1,253,000	1,253,000

- ※ 조명 및 실링팬 Style up : ①우물천장 내 {건축화조명 및 시트패널}, ②침실특화조명, ③단천장+리니어조명[거실 전/후면], ④실링팬
- ※ 주방 Style up : ①레이아웃 변경(해당타입)[현관창고 확대+와이드 다이닝 공간/팬트리+홀바(유럽산 하드웨어)][84C는 홀바 미적용, 99A,B는 팬트리 미적용], ②수입주방가구(Arredo3 수납장+유럽산 하드웨어 및 액세서리), ③특화수전(GESSI), ④세라믹 패널 상판, ⑤우물천장 및 간접조명, ⑥루버천장, ⑦특화 식탁조명, ⑧독립형 후드
- ※ 욕실 고급수전/도기 : ①세면기, ②세면기 수전, ③샤워수전, ④비데일체형양변기(가족욕실), ⑤욕실 액세서리 및 샤워부스
- ※ 욕실 복합 환풍기 : 힘펠 FHD3-C150P_LUMI / 쿱탑(디오스 전기 인덕션) : LG전자 BEI3ASB4BI

■ 추가선택품목(가전옵션)

- 시스템에어컨(LG전자 Premium UV nano 실내기)

(단위 : 원 / 부가가치세 포함)

타입(약식표기)	선택안	수량	설치장소	금액	비고
84A, 84B, 84D, 84E	선택1	2대	거실, 침실1	4,340,000	기본
	선택2	4대	거실, 침실1, 침실2, 침실3	7,920,000	
	선택3	5대	거실, 침실1, 침실2, 침실3, 알파룸	9,370,000	
84A, 84B, 84D, 84E	선택1	3대	거실, 주방, 침실1	5,970,000	주방 Style up
	선택2	5대	거실, 주방, 침실1, 침실2, 침실3	9,370,000	
84A, 84B, 84D, 84E	선택1	3대	거실, 주방, 침실1	5,970,000	주방냉방강화
	선택2	5대	거실, 주방, 침실1, 침실2, 침실3	9,370,000	
	선택3	6대	거실, 주방, 침실1, 침실2, 침실3, 알파룸	11,110,000	
84C	선택1	3대	거실, 주방, 침실1	5,970,000	기본
	선택2	5대	거실, 주방, 침실1, 침실2, 침실3	9,370,000	
99A, 99B	선택1	3대	거실, 주방, 침실1	6,470,000	주방 Style up
	선택2	5대	거실, 주방, 침실1, 침실2, 침실3	9,660,000	
	선택3	6대	거실, 주방, 침실1, 침실2, 침실3, 알파룸	11,120,000	

- 환기형 공기청정시스템

(단위 : 원 / 부가가치세 포함)

타입(약식표기)	선택안	수량	설치장소	금액	공급업체
84A, 84B, 84C, 84D, 84E, 99A,99B	선택1	2대	거실, 주방	2,150,000	자이에스앤디
	선택2	2대	거실, 침실1	2,150,000	
	선택3	3대	거실, 주방, 침실1	3,200,000	
	선택4	5대	거실, 주방, 침실1, 침실2, 침실3	5,300,000	

- 주방가전

(단위 : 원 / 부가가치세 포함)

품목	제조사	모델명	금액	비고
오브제 컬렉션 Fit&Max	LG전자	M62BAAA332+Z334AAA151	6,200,000	냉장,냉동 + 김치 (스테인레스)
광파오븐		MZ385EBTAD	540,000	드로워 포함
식기세척기		DIE6PT	1,450,000	가구 부착형 (14인용)

■ 추가선택품목 유의사항

- 추가선택품목은 설치의 특성상 발코니확장 선택 시에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제4조제1항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시행지침」제4조1항에 의거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품목으로서 계약자는 추가로 품목을 선택하고 공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추가선택품목의 설치여부에 대하여 입주자모집공고 시 입주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입주자와 주택공급계약 체결 시 추가선택품목의 구입 의사가 있는 입주자와 추가선택품목 공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본 모집공고 외 추가선택품목 설치에 관한 내용은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및 시행지침」에 따릅니다.
- 상기 유상옵션은 계약 시점 이후 시공을 위해 자재를 발주해야 하므로 중도금 납부 이후에는 유상옵션 공급 주체 및 시공사의 동의 없이 계약 해제 및 변경이 불가합니다.(추가선택품목 계약 체결 최종 일정은 별도 통보 예정입니다.)
- 자재 조달 등의 문제로 일정 시점 이후에는 별도로 유상옵션의 계약이 불가합니다.
- 상기 추가선택품목 금액에는 취득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입주 후 관할 관청으로부터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카탈로그상 표기되는 각 실의 명칭은 카탈로그 기준이나, 설계변경 등으로 변경될 수 있으니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등급 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신청 형별 설치 위치 등 세부사항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선택품목의 설치 위치는 지정되어 있으며,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를 지정할 수 없습니다.
- 추가선택품목의 위치 및 선택 항목은 홈페이지 또는 견본주택에 전시되오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선택품목은 견본주택에 설치된 세대에 일부 품목이 전시되오니 청약 및 계약 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선택품목은 본 아파트 컨셉에 맞추어 디자인하고 품질 관리하는 품목으로써 판매가 및 사양에 대해 교체 및 해약을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사 및 기타, 시중 품목과 비교 검토한 후에 계약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시스템에어컨 선택 옵션에 따라서 시스템에어컨 수량 및 냉방 용량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상기 금액은 이에 따른 비용을 반영한 금액입니다.
- 상기 타입(약식표기)별 시스템에어컨 공사비 산정 시, 타입(약식표기)별 면적에 따른 실외기 용량 차이로 인해 금액 차이가 발생합니다.
- 시스템에어컨은 냉방전용 제품으로 난방 운전이 불가하며, 운전 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설치로 인하여 우물천장의 크기 및 깊이, 에어컨 설치 부위의 천장 높이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위치는 등기구 위치를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리모컨은 실내기 1대당 1개가 제공되며, 시스템에어컨 실외기는 실내기 소요 용량에 맞는 제품이 설치됩니다.
- 시스템에어컨 설치시 실외기가 설치되는 구간에 노출 배관이 설치되며, 미관을 해칠 수 있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옵션 선택에 따라 각 세대내 실외기실에는 에어컨 실외기가 설치되며, 이로 인한 실외기실 공간이 협소해질 수 있습니다.
- 환기형 공기청정시스템을 위해 일정 공간이 필요하며 설치 공간이 부족할 경우 환기형 공기청정시스템 적용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환기형 공기청정시스템 옵션에 따라 세대 내 공기 청정화 능력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환기형 공기청정시스템은 한국공기청정협회(CA)에서 지정한 소음 기준에 부합하나 개인별 소음 인지에 대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환기형 공기청정시스템은 천장에 빌트인 형태로 설치되는 제품으로 천장에 설치되는 기타 장애물(스프링클러, 감지기 등)을 고려하여 실시공 시 설치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환기형 공기청정시스템은 제조사 및 디자인 변경,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실 설치시 모델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는 품질 향상을 위한 개선으로 동등 이상 수준의 제품으로 대체될 수 있습니다.
- 환기형 공기청정시스템을 구성품은 천장형 공기청정기와 리모컨이며 천장형 공기청정기 1대당 제어용 리모컨 1대를 제공하오니 계약 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환기형 공기청정시스템은 내부 시스템 업그레이드에 따라 견본주택에 설치된 제품과 상이한 제품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주방가전제품은 주방 구조에 따라 설치 위치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욕실 복합환풍기를 선택하면 기본 제공되는 욕실 배기팬은 설치되지 않습니다. (복합환풍기에 배기기능포함)
- 욕실 복합환풍기 운전 시 소음이 발생하고 인접 실내로 소음·진동이 전달될 수 있습니다.
- 욕실 복합환풍기 설치 위치와 방향은 세대별·시공 여건(천장 점검구·천장 내부 설비·천장 조명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납부계좌

구분		금융기관	계좌	예금주
발코니확장	계약금	하나은행	231-910057-07904	교보자산신탁(주)
	중도금, 잔금		세대별 가상계좌 부여	

※ 발코니확장 계약은 공급계약과 같이 계약이 진행될 예정이며, 추가선택품목(플러스옵션) 및 추가선택품목(가전옵션)의 계약일정은 추후 안내 될 예정으로 납부비율은 하기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납부일정은 계약 시 안내 예정입니다.

구분		금융기관	계좌	예금주
추가선택품목 (플러스옵션)	계약금	하나은행	231-910058-03104	GS건설(주)
	중도금, 잔금		세대별 가상계좌 부여	

구분		금융기관	계좌	예금주
추가선택품목 (가전옵션)	계약금	신한은행	100-030-466930	자이에스앤디(주)
	중도금, 잔금		계약별 가상계좌 부여	

- ※ 추가선택품목(플러스옵션) 계약금(10%), 중도금(10%), 잔금(80%)의 순서로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일정은 계약시점에 재안내 예정입니다.
- ※ 추가선택품목(가전옵션) 중 시스템어컨, 환기형 공기청정시스템은 계약금(10%), 중도금 1차(40%), 중도금 2차(40%), 잔금(10%)의 순서로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일정은 계약시점에 재안내 예정입니다.
- ※ 추가선택품목(가전옵션) 중 주방가전은 계약금(10%), 중도금 1차(0%), 중도금 2차(30%), 잔금(60%)의 순서로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일정은 계약시점에 재안내 예정입니다.
- ※ 상기의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대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견본주택에서 현금 또는 수표 수납이 불가합니다.
- ※ '분양대금', '발코니확장', '추가선택품목' 납부계좌가 상이하므로 반드시 구분하여 입금하여야 하며, 착오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 시 사업주체는 책임지지 않음을 분명히 인지하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계약금 계좌는 모계좌로서 중도금, 잔금부터는 세대별로 부여되는 가상계좌에 입금하시면 상기 모계좌로 이체되어 관리되며, 세대별로 계좌번호가 상이하므로 입금 시 유의 바랍니다.
- ※ 지정된 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부일에 해당 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라며, 사업주체에서는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 입금 시 반드시 동호수 및 계약자명을 기재하여야 합니다.(101동 101호 : 서명란에 "1010101홍길동"이라고 정확히 기재)
- ※ 타인 명의 등 계약금 납부 주체가 당첨자와 상이하거나 불분명하게 입금된 경우에는 계약금 미납 및 계약 미체결로 처리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제반 문제에 대하여 사업주체에서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 입금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소명 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은 1개월 이상 소요됩니다.
- ※ 추가선택품목(가전옵션) 공사비 납부 계좌는 개인별로 부여되는 가상계좌이며, 품목별로 지정된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추가선택품목 공사비는 인정하지 않으며, 공동주택 분양대금 입금 계좌와 상이하므로 입금 시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 추가선택품목(가전옵션)은 시공 전문 자회사인 자이에스앤디(주)에서 계약 체결 및 시공 예정으로 계좌가 상이합니다.

11 기타

- ※ 다음의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어 착오 없으시기 바라며, 확인 이후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견본주택으로 문의하여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는 관계법령이 우선합니다.

사업관련

구분	시행수탁사	시공사	시행위탁사
상호	교보자산신탁(주)	지에스건설(주)	주식회사 에이치엠도안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465 A,B동 7,8층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33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711 16층
법인등록번호	110111-1617434	110111-0002694	110111-7945649

관리형 토지신탁

- 본 공급시설은 안정적인 진행을 위해 「신탁법」과 「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위탁사인 주식회사 에이치엠도안(이하 '시행위탁사'라 함), 시행수탁사 교보자산신탁(주)(이하 '시행수탁사'라 함) 및 시공사 지에스건설(주)(이하 '시공사'라 함) 간 체결한 관리형 토지신탁 계약(이하 '신탁계약'이라 함) 방식으로 시행 및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분양계약자는 다음 사항을 인지하여야 합니다.
 - ① 위 분양 건축물의 신축 및 분양사업은 "시행위탁사"가 "시행수탁사"에게 사업부지 및 시행을 신탁하여 진행하는 관리형 토지신탁사업으로, 실질적인 분양사업자는 "시행위탁사"임을 "계약자"는 인지한다.
 - ② 본 계약의 각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행수탁사"는 관련 법률 및 본 분양계약상 매도인의 제반 의무(분양대금 반환, 지체상금 배상, 하자보수 책임을 포함하며 이에 한하지 않는다.)를 신탁재산의 한도 내에서 만 부담하며, 이를 넘는 책임은 "시행위탁사"가 부담한다.
 - ③ "시행위탁사"의 신탁계약상 위탁사의 지위가 양도되는 경우 "계약자"는 그 사실을 통지받은 시점에 양도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 ④ "계약자"에게 위 분양목적물의 소유권이전이 완료되는 시점과 신탁계약이 종료되는 시점 중 빠른 시점에, 본 계약상 매도인의 지위 및 수탁사가 부담하는 제반 권리의무는 계약변경 등 별도의 조치 없이 "시행위탁사(지위의 승계가 있을 경우 그 승계인)"에게 면책적, 포괄적으로 승계되며, "계약자"는 이에 동의한다.
 - ⑤ 분양대금은 토지비, 공사비, 금융기관 대출금 상환, 기타 사업비용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감리관련(감리금액은 사정에 따라 다소 변동될 수 있음)

(단위: 원 / 부가가치세 포함)

구분	건축감리	전기감리	소방감리	통신감리
회사명	(주)테크뱅크	(주)대림엠이씨	(주)라인엔지니어링	태양기술단(주)
금액	5,438,063,400	1,110,444,335	1,560,468,250	264,000,000

보증관련

■ 주택도시보증공사 : 본 아파트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득하였습니다.

보증서번호	보증금액	보증기간
제01282026-101-0003000호	₩521,029,740,000	입주자모집공고승인일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 (사용검사 또는 당해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 포함)까지

■ 보증 약관 주요 내용

-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 아파트 공사진행 정보 제공 :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 사업장의 공사진행 정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HUG-i)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제1조 (보증채무의 내용)

공사는 「주택도시보증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주채무자가 보증사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해당 주택의 분양이행 또는 환급이행 책임을 부담합니다.

【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의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주채무자】 보증서에 적힌 사업주체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분양이행】 주택법령에서 정한 주택건설기준 및 해당 사업장의 사업계획승인서,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 입주를 마친

【환급이행】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되돌려 줌

- 제2조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 등의 납부)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분양권 양도자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에는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않습니다.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채무자가 주택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한 채무
2. 주채무자가 대물변제·허위계약·이중계약 등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대물변제】 주채무자의 채권자가 그 채권에 대하여 주채무자가 분양하는 아파트 등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변제에 갈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허위계약】 분양의사가 없는 자가 주채무자의 자금 유통 등을 돕기 위하여 명의를 빌려주어 분양계약하는 것으로 차명계약을 의미합니다.

3. 입주자모집공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입주금】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로부터 받는 계약금과 중도금 및 잔금을 말합니다.

4.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한 입주금납부계좌(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서에서 지정한 계좌를, 공사가 입주금납부계좌를 변경·통보한 후에는 변경된 납부계좌를 말함)에 납부하지 않은 입주금.
5. 공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입주금의 납부중지를 알린 후에 그 납부중지통보계좌에 납부한 입주금
6.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납부기일 전에 납부한 입주금중 납부기일이 보증사고일 후에 해당하는 입주금. 다만, 공사가 입주금을 관리(주채무자 등과 공동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계좌에 납부된 입주금은 제외합니다.
7. 보증채권자가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넘어 납부한 입주금
8.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입주금에 대한 이자, 비용, 그 밖의 종속채무
9. 보증채권자가 대출받은 입주금 대출금의 이자
10. 보증채권자가 입주금의 납부지연으로 납부한 지연배상금
11. 보증사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되돌려 주어야 할 입주금. 다만, 보증사고 사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유로 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 발생 이전에 분양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12. 주채무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 이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의 지체상금
13.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주택 또는 일반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의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사양선택 품목(예시:홈오토, 발코니샤시, 마이너스옵션 부위, 그 밖의 마감재공사)과 관련한 금액
14. 보증채권자가 제5조의 보증채무이행 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3조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그 밖에 보증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된 채무
15.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등과 도급관계에 있는 수급인, 그 대표자 또는 임직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등에게 자금조달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납부한 입주금
16.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또는 그 대표자 등이 보증채권자에 대한 채무상환을 위하여 납부한 입주금
17.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또는 그 대표자 등으로부터 계약금 등을 빌려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② 공사가 제6조에 따라 분양이행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보증채권자는 잔여입주금 및 제1항 제4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입주금을 공사에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입주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잔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1. 사용검사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2.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중 전체 입주금의 9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잔금

【보증채권자】 보증서에 적힌 사업에 대하여 주택법령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여 주채무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분양권 양수자를 포함)를 말합니다. 다만, 법인이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 이전에 그 주택분양계약에 대하여 공사에 직접 보증편입을 요청하고 동의를 받은 법인만 보증채권자로 봅니다. 이하 같습니다.

- 제4조 (보증사고)

① 보증사고란 보증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주채무자의 정상적인 주택분양계약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1. 주채무자에게 부도·파산·회생절차개시신청·사업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예정공정률(주채무자가 감리자에게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의 공정률을 말함. 이하 같음)보다 25퍼센트P 이상 부족하여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다만, 입주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행청구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3.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75퍼센트를 넘는 경우로서 실행공정이 정당한 사유 없이 예정공정보다 6개월 이상 지연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4. 시공자의 부도·파산 등으로 공사 중단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보증기간】 해당 주택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복리시설의 경우 신고일을 말함)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검사 또는 해당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함)까지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 ② 보증사고일은 공사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사고 안내문으로 알려면서 다음 각 호 중에서 보증사고일로 지정한 날을 말합니다. 이 경우 공사는 보증서에 적힌 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일간지(공고를 한 일간지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개 일간지를 말함)에 실어 통보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이하 같습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부도·파산일, 회생절차개시신청일, 사업포기 관련 문서접수일 등
 2. 제1항 제2호에서 제4호의 경우에는 보증이행청구 접수일

설계관련

■ **부대복리시설**

- 관리사무소, 경비실, 방재실, 근로자휴게실, 경로당, 어린이집, 작은도서관, 주민운동시설, 어린이놀이터, 다함께돌봄센터, 주민공동시설 등

■ **입주자 사전방문 안내**

- 「주택법」제48조의2에 따라 아래 공사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주개시 전에 입주자 사전방문을 실시할 예정이며, 정확한 사전방문 예정일자는 별도 통보합니다.
- 「주택법 시행규칙」제20조의2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1조제3항제27호에 따라 도장공사·도배공사·가구공사·타일공사·주방용구공사 및 위생기구공사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주지정기간 시작일 45일전까지 2일 이상 입주자 사전방문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입주예정일 : 2029년 10월 예정 (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과 잔금을 실입주일에 함께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공사 중 지하암반발생,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 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입주하는 경우 잔금 완납, 소유권이전, 거주 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발생하는 관리비, 제세공과금 및 기타 비용에 대해서는 계약자가 부담하고,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계약자의 관리 부재, 부주의 또는 과실 등으로 인한 피해와 리스크에 대해서는 계약자가 책임을 부담합니다. 또한, 계약자의 불이행으로 인해 사업주체가 입은 손해는 계약자가 배상합니다.
- 소유권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습니다.(특히 대지의 이전등기는 상당기간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건물등기와 대지권 등기를 별도로 이행하여야 함)
- 입주 시 단지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탁관리업체에서 관리비 예치금을 부과합니다.

■ **내진성능 및 능력 공개**

- 본 아파트는 「건축법」제48조 및 제48조의3에 따른 건축물의 내진성능 확보 여부와 내진능력 공개에 의거 메르칼리 진도 등급을 기준으로 내진능력을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구분	등급
내진능력	VII-0.224g[내진I등급]

※ 내진능력 : 건축물이 지진 발생 시에 견딜 수 있는 능력으로,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60조의2에 따라 산정한 수평 메르칼리 진도 등급(MMI등급, VII-최대지반가속도)으로 표기

■ **주차장 차로 및 출입구의 높이**

- 본 아파트의 지하주차장은 인,허가 도서에 준해 설치되며, 해당 천장고 초과 차량은 출입할 수 없습니다.

구분	주차장 차로의 높이	주차장 출입구의 높이
지하1층	2.7m (단, 주차공간은 2.1m 이상)	2.7m
지하2층	2.3m (단, 주차공간은 2.1m 이상)	2.3m

■ **주차장 주차대수(「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7조)**

- 설치대수 : 총 1,766대(공동주택 1,756대, 근린생활시설 10대)
- ※ 주택건설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여건 변화 및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 등에 따라 주차대수 및 주차단위구획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주차장은 분양세대와 임대세대가 공동으로 사용합니다.

■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1조제3항)

의무사항	적용여부	사양, 성능, 설치위치, 설치개수	
고단열 고기밀 현관문	적용	1등급	
창의 기밀성능 (세대 직접외기 이중창)	적용	1등급	
건축 부문 설계 기준	단열조치 준수(가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1호에 의한 단열조치
	바닥난방의 단열재 설치(나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3호에 의한 바닥난방에서 단열재의 설치
	방습층 설치(다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4호에 의한 기밀 및 결로방지 등을 위한 조치를 준수
기계 부문 설계 기준	설계용 외기조건 준수(가목) (냉·난방설비가 없는 경우 제외)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8조제1호에 의한 설계용 외기조건 준수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나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8조제2호에 의한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 준수
	고효율 가정용보일러(다목)	적용	가정용보일러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제17조에 따른 환경표지 인증 제품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대상 제품별 인증기준에 적합한 제품 사용
	고효율 전동기(라목)	적용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또는 최소소비효율기준 만족 제품 (0.7kW이하 전동기 소방 및 제연 송풍기용 제외)
	고효율 난방, 급탕·급수펌프(마목)	적용	난방, 급탕 및 급수펌프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받은 제품을 사용하거나 그 평균 효율이 KS 규격에서 정해진 기준 효율의 1.12배 이상의 제품을 사용
	절수형설비 설치(바목)	적용	세대 내 설치되는 수전류는 「수도법」 제15조 시행규칙 제1조의2, [별표1]에 따른 절수형 설비 적용
	실별 온도조절장치(사목)	적용	세대 내에는 각 실별 난방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온도조절장치를 설치
전기 부문 설계 기준	수변전설비 설치(가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1호에 의한 수변전설비 설치
	간선 및 동력설비 설치(나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2호에 의한 간선 및 동력설비 설치
	조명설치 설치(다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3호에 의한 조명설비 설치
	공용화장실 자동점멸스위치(마목)	적용	단지 내의 공용화장실에는 화장실의 사용여부에 따라 자동으로 점멸되는 스위치를 설치

■ 공동주택성능에 대한 등급(「주택법」제39조)

녹색건축 예비 인증서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서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
<p>녹색건축 예비 인증서</p> <p>본 인증서는 「녹색건축을 조성 지원법」 제16조 및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제11조 제3항에 따라 녹색건축(우수 등급)건축물로 인증되었기에 인증서를 발급합니다.</p> <p>2023년 3월 8일</p> <p>kpc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p>	<p>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서</p> <p>본 인증서는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재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제 6호 서식(개정 2017.12.20)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서</p> <p>에너지 성능 평가 결과: 난방 82.1, 냉방 85.1, 급탕 85.5, 조명 82.9, 환기 82.9, 기타 82.9</p> <p>2025년 12월 04일</p> <p>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p>	<p>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p> <p>본 주택성능등급 인증서 관련 규칙(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3. 6. 30></p> <p>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p> <p>1. 공동주택명: 도안자이 센텀리체 1단지 2. 신 청 자: ㈜에이치엠도안 3. 내 지 위 치: 대전광역시 유성구 용계동 267-3번지 일원 4. 성능 등급</p> <p>가. 소수 관련 등급 나. 환경 관련 등급 다. 생활 관련 등급 라. 생활 관련 등급 마. 환경 관련 등급</p> <p>2025년 12월 04일</p> <p>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p>

구분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개발사업구역 지구단위 지침에 의하여 설치되는 도로, 공원(소공원) 등 개설로 인하여 소음 및 사생활 침해 등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본 공고문에 명기되지 않은 사업지구 내 유해시설의 위치는 청약 및 계약 시 견본주택 및 현장 확인을 통하여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도시개발사업구역의 기반시설공사 준공 지연 등으로 대지의 이전등기가 상당 기간 지연될 수 있고, 도시개발사업구역 확정 측량에 따라 대지 지분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각 세대별 대지지분의 경우 확정측량한 아파트 대지지분에서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로 배분하여 소수점 넷째자리 미만에서 단수 조정하며 입주자모집 공고 상의 대지지분과 소수점 이하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도안지구 2단계는 연차적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도안지구 3단계도 진행될 예정이므로, 타 사업지에 대한 조성공사 및 건축공사가 일부 진행 중 또는 입주후에 진행될 예정으로 해당 공사로 인한 소음, 비산먼지 및 교통장애 등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도안지구 2단계 내 기반시설(도로, 상하수도, 공원, 학교 등), 사업부지 외의 개발계획 및 기반시설은 각 민간사업자, 조합, 지자체, 기관이 각각 그 역할을 나누어 계획하고 설치되는 사항으로 관련 규정 또는 개발계획 변경 등으로 사업 추진 과정에서 변경되거나 취소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 시기가 지연될 수 있고,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그에 따른 책임이 없습니다. ■ 본 사업지 인근 도로의 신설 또는 확장계획은 인허가 추진일정 및 관계기관 협의 결과 등에 따라 개설 지연취소, 노선변경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인허가청 협의사항에 따라 단지 내 비점오염저감시설이 설치되며, 해당 시설은 향후 입주민이 자체적으로 유지, 관리하여야 합니다. ■ 차집관로와 연결되는 단지 내 오수관로 최말단부에는 고형물 유입 방지를 위한 스크린이 설치될 수 있으며, 해당 시설은 향후 입주민이 자체적으로 유지, 관리하여야 합니다.
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아파트 내에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에 따라 어린이집이 의무적으로 설치되며, 해당 어린이집 시설은 영유아보육법 제12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의2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운영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는 아파트 사용검사 신청 전까지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에 관한 협약을 대전시 유성구와 체결할 예정입니다. 다만, 입주(예정)자 및 임차(예정)자 등의 과반수가 서면으로 이를 동의하지 않을 경우 국공립어린이집이 설치되지 않을 수 있으며, 필요시 사업주체는 입주자 의견청취 절차 등을 포함하여 안내할 계획입니다. ■ 본 아파트 내에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에 따라 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한 다함께돌봄센터가 의무적으로 설치되며, 해당 센터는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에 따라 대전시 유성구청이 직영 또는 위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사업주체는 아파트 사용검사 신청 전까지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협약을 관할 관청인 대전시 유성구와 체결할 예정입니다. 다만, 입주(예정)자 및 임차(예정)자 등의 과반수가 서면으로 이를 동의하지 않을 경우 다함께돌봄센터가 설치되지 않을 수 있으며, 필요시 사업주체는 입주자 의견청취 절차 등을 포함하여 안내할 계획입니다. ■ 본 단지에 입주하는 학생은 주택개발상황 및 입주시기, 교육부 정책 등을 기준으로 대전시교육청(행정과)의 학생배치계획에 따라 배치될 계획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교육청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전광역시 교육청 행정과)
동별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동의 저층 세대는 차량 통행 및 보행자로 인한 빛의 산란, 소음, 사생활 침해, 쓰레기분리수거소의 악취, 분진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공동주택 발전기용 급배기 D.A 가 설치되어, 발전기 가동 시 소음 및 진동, 연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일부 동의 주변 건물 및 구조물, 기존 건물의 재건축 및 증축, 단지 내 인접 동 및 같은 동 다른 라인에 의해 조망권의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각 동의 주출입구 및 로비는 주변 여건에 따라 위치, 크기 및 형태, 구조 형식 등이 동별로 상이할 수 있으며 상품개선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일부 동 호에는 이삿짐용 사다리차 접근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단지내·외에 레벌차가 있는 구간에는 자연석 쌓기, 비탈면, 옹벽 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 부분에 인접한 세대는 조망권 침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필로티가 설치되는 동은 주행 차량 또는 보행자로 인해 생활권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낙하물 방지를 위한 캐노피가 추가 설치될 수 있고, 캐노피 형태와 재질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 동별 계단실 내 창호는 일부는 고정창, 일부는 프로젝트창으로 적용되며, 프로젝트창의 적용 위치는 층별, 동별 여건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엘리베이터홀 내 창호 유무 및 크기는 위치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101동,103동,105동,107동 서측에는 학교가 위치하여 소음 피해 및 사생활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출입구 및 부대시설, 단지 외 버스정류장 인접하여 장애인 편의시설(장애인용 승강기)이 설치됩니다. ■ 임대 동과 분양 동이 분리되어 있지 않으며, 임대 세대와 분양 세대가 함께 혼합되어 있어 복도, 엘리베이터, 계단 및 공원 등을 공용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이에 대해 입주민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단지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치도의 대지경계선, 구역경계선, 법면 현황은 최종 측량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내부 도로 및 조경선은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 시 현장 여건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배치도 상의 각 시설의 명칭 및 내용은 인허가 과정, 법규 변경, 공사 여건 및 상품 개선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계획은 본 시공 시 현장 여건에 맞게 설계 변경될 수 있으며 본 시공 시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용적률, 주차 대

구분	내용
	<p>수는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대복리시설(주민공동시설 등), 근린생활시설의 구성 및 건축 이용 계획은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 시 현장 여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상하수도, 도시가스, 전기, 통신 등 각종 인입 계획은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 시 현장 여건에 따라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는 단지 배치 및 층별, 향, 동, 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조망권·소음 및 진동·악취 발생·사생활 침해 등 생활의 불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거 동의 동, 호수, 층별 위치에 따라 난간턱의 높이, 난간대의 형태 및 재질 등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동 출입구의 장애인용 경사로, 단지 외부 도로, 단지 내 도로(차도, 비상차도, 산책로, 지하 주차장 경사로 등), 어린이집, 조경시설(수공간 등), 주민운동시설 및 어린이 놀이터, 자전거 보관소, 지하주차장 주차 램프, 단지 주출입구 등과 인접한 세대는 소음, 불빛, 분진 등에 의한 생활권과 사생활 침해 등 각종 환경권의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구간별 사업 부지 단차 구간에 조경석 쌓기 또는 옹벽이 설치될 수 있으며, 추후 인허가 조건, 미관, 구조물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동 상부에 공용부 전기 생산을 위한 태양광 집광판이 설치되며, 위치 및 규모(크기, 높이, 개소)는 본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동 배치 및 일조량에 따라 일부 동 혹은 전체 동에 분산 설치되며, 구조물에 의해 설치 높이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옥탑층에 의자용 구조물, 설비 통기 배관, 연도, 고가수조, 경관조명, 위성안테나, 공칭 안테나, 태양광 집광판, 이동통신 중계기, 항공장애등, 피뢰침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일조권·조망권·소음 및 진동·사생활 침해, 조명 및 빛의 산란에 의해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 및 지하주차장의 기초 구조는 굴토 후 지내력시험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요 구조체는 정밀구조 계산에 따라 최적화 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내력벽은 비내력벽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치장석재/벽돌 및 필로티 마감은 비구조 요소 내진 설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일부 동은 필로티가 설치되며, 필로티의 층고는 각 동마다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주출입구 및 부출입구를 제외한 보행자 전용 통로는 개방형으로 시공되므로 외부 인원의 통행제한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배제도 상에 표현된 D.A의 위치, 수량 및 크기는 변동될 수 있으며, 일부 D.A는 건물에 매립되어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옥외 계단 및 옥외 엘리베이터는 실시공 과정에서 디자인, 색상, 설계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스프링클러 배관 관경 및 기준 개수 등 소화 시설물의 기준은 수리 계산에 의해 설계도면과 다르게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조경 공간의 형태, 도로의 선형, 포장 계획, 세부 식재 위치 등은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 시 현장 여건 등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옥외 조경 공간에 지하시설물 환기 및 채광을 위한 시설물(환기창, D.A, 발전기 연도 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저층 세대와 단지 내 통행로 등에 인접할 경우 생활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수경 시설 사용에 의해 발생하는 관리·유지·보수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단지 외부 시설 내 인터넷 필요 시 통신 관련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단지 내부에 전력 및 통신 인입을 위한 시설물, 전력 및 통신 맨홀 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 시설물의 위치는 한국전력공사, 기간통신사업자와의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전기통신사업법 제 69조의2 및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 24조의2 등에 의거, 기간통신사업자 협의대표인 한국전파진흥협회 이동통신설비 구축지원센터와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의 설치 장소 및 설치방법 등에 대해 협의하였습니다. 단지내에 기간통신사업자의 이동통신 중계기 및 옥외안테나가 설치 될 예정이며, 본 공사 시 우수한 통신품질이 제공될 수 있는 위치로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추후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청약 전 반드시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동통신설비 설치 예정위치 : 102동, 103동, 104동, 107동, 108동 옥상층 및 103동, 104동 인근 지하1층 동전기실, 103동, 104동 인근 지하2층 PIT, 지상1층 DA 인근 3개소" ■ 일부 동 전,후면 또는 인근에 옥외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인근 세대는 소음 등에 의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계약 전 단지 모형 등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배치상 레벨차에 의해 데크로 분할 계획되어 있으며, 각 데크의 수직면 및 인접 대지와 레벨차에 따른 옹벽면에 인접한 세대는 조망권, 일조권 침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공기안전매트 설치 구간에는 교목 및 관목 식재가 되지 않으며 인·허가 과정 등에 따라 식재 계획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텃밭 조성 시 입주인이 자체적으로 배분 및 운영, 관리하여야 하며, 인근 세대는 이로 인한 소음, 냄새, 사생활 침해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도로는 비상 상황에서 소방차 등의 비상 차량에 한해 이용할 수 있으며, 일반 차량이 이용할 경우 보행자 안전 상의 문제가 있을 수 있을 수 있습니다. ■ 유아 놀이터는 어린이집 전용으로 계획되어 있으므로 입주자의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주동 및 근린생활시설, 주민공동시설 등 부대시설 상부에 옥상 조경이 설치될 수 있으며, 조경 계획은 옥상의 환경을 고려해 실시설계 및 시공 시 확정됩니다.

구분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계 후 수경시설에 대한 안전, 보건, 수질관리, 관리소홀로 인한 오염수, 미생물이나 해충 발생등에 대한 관리 책임은 관리 주체 또는 입주자에게 있습니다. ■ 견본주택 내 전시된 단지모형과 일조권(수인한도), 조망권 침해관련 현장설명, 견본주택에 비치된 설계도서 등을 통해 일조권, 조망권 침해정도를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공급계약을 체결해야합니다. 이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침해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제기, 손해배상청구, 계약해제 등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입주자모집공고 상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에 기재된 경량충격음·중량충격음 차단성능은 주택법 제39조에 따라 설계단계에서 인증기관으로부터 예비인증된 이론적 성능 예측치입니다. 실제 완공 후 층간소음 차단성능은 주택법 제41조의2에 따라 사용검사 전에 실시하는 바닥충격음 성능검사(층간소음 사후확인제)의 측정값을 기준으로 확인되며, 설계단계 예측치와 실측값은 시공 과정의 여러 기술적·환경적 변수(완충재 상태, 마감재 시공 정밀도 등)에 따라 서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2에서 정한 바닥충격음 기준(경량충격음·중량충격음 각 49dB 이하) 충족을 목표로 시공하며, 실측 검사결과가 관련규정 기준치 미달 시 관계 법령에 따라 보완시공 등 적절한 조치를 실시합니다.
외관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장부 벽에 입면 디자인을 위한 돌출부가 있을 수 있으며, 일부 세대의 외벽 및 발코니, 지붕 등에 장식용 구조물 등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건물의 외관 디자인(색채, 줄눈 계획, 입면 패턴, 마감재, 옥상 구조물 등), 공용부 디자인(동 출입구, 지하층 출입구, 필로티, 캐노피, 주차장 램프, 경비실, 부대시설 등), 외부 시설물(문주, D.A, 자전거 보관소, 쓰레기분리수거소 등), 조경 디자인, BI 위치 및 내용, 난간의 형태, 옹벽 디자인 등은 설계 및 인·허가 과정, 발주처 협의에 따라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으며, 당사의 고유한 업무 영역으로 입주자의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아파트 저층부는 석재, 석재뿔칠, 페인트 등 기타 자재로 마감되고, 중동 형태에 따라 각 자재의 적용 비율 및 적용 층수는 각 동별로 상이할 수 있으며, 인허가 및 현장 여건에 의해 조정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문주는 진입 공간 배치 현황 및 현장 여건에 맞춰 형태, 크기, 배치가 결정되며, 문주 설치로 인해 주 진입부에 위치한 일부 저층 세대에서는 세대 조망에 간섭 및 일조권 침해가 있을 수 있으며, 문주에 설치된 조명 및 빛의 산란에 의해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외부 마감재 사양, 위치, 개소수, 크기 등 각종 디자인 일체 및 BI 위치, 개소수는 1단지와 2단지가 서로 상이할수 있으며, 본 아파트의 마감재 사양 및 디자인에 대해 1단지와 2단지, 타사 및 당사의 타 단지를 비교하여 추가 설치 또는 교체 등의 요구를 할 수 없으므로 충분히 비교 검토 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아파트에 적용된 외관 특화, 입면, 색채 및 마감재 등 디자인 일체는 변경될 수 있으며, 인허가 등 중대한 변경 사유 발생 및 마감 수준 저하가 아닌 경우 입주자에게 별도의 동의 절차를 받지 않습니다. ■ 아파트 옥상 및 외벽에 경관조명, 조형물 및 로고(BI) 등이 설치되어 일부 세대 일조, 조망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LED조명으로 인하여 인접 세대는 빛반사로 인한 눈부심, 소음 등 피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외벽에 유리마감재(커튼월록) 및 몰딩이 설치되며 면적은 동별로 상이합니다. 동 위치에 따라 일부 동은 빛의 반사로 인한 눈부심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경관조명은 빛공해 심의 결과에 따라 설치 및 작동에 제약이 있거나 위치 등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에 적용된 대형옥상장식물 등 경관 조명이 결합된 외관 요소는 발주처 및 인허가청 협의를 통해 설치하는 것으로 입주예정자의 요청에 의해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없습니다
공용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아파트는 분양세대와 임대세대가 혼합되어 있는 혼합단지로서 「공동주택관리법」제10조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와 임대사업자는 혼합주택단지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공동으로 결정하여야 하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2조제4항에 적용되는 경우 임대사업자와 임차인대표회의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합니다. ■ 주민공동시설, 근린생활시설 등 부대시설에 인접한 세대는 해당 시설 이용 및 부속시설물(보일러 연도, 에어컨 실외기, 배기팬, 설비 시설, 쓰레기분리수거소, 옥외 엘리베이터 등)로 인해 일조권·조망권·소음 및 진동·열기·사생활 침해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현장 여건에 따라 부속시설물의 위치 및 크기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계획된 주민공동시설(어린이놀이터, 야외 운동시설, CLUB XIAN, 어린이집 등) 및 산책로 설치로 인해 아파트 세대의 프라이버시가 침해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주민공동시설의 구체적인 운영 방법은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 후 입주자에 의해 결정됩니다. ■ 주민공동시설의 기본 마감 외의 시설 운영을 위한 내부 소모품 및 집기류(이동 가구, 비품, 서적, 스탠드 등) 등은 제공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동주택관리법 제11조에 의거 사업 주체는 입주민들의 편의를 위하여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부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후 새로운 주택관리업체를 선정할 때까지 주민공동시설 등을 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제반 비용은 동법 제23조에 의거, 관리비에 포함하여 개별 세대에 부과됩니다. 다만, 해당 주택관리업자는「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7조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와 임대사업자가 공동으로 결정하여 선정된 자로 합니다.) ■ 주민공동시설 등 부대시설의 성능 개선 또는 인허가 협의 결과에 따라 실 시공 시 위치, 동선, 실내 구획, 입면 디자인, 마감재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 단지 내 쓰레기분리수거소 및 재활용 보관소 등이 설치되어 일부 세대는 냄새 및 소음, 분진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쓰레기 수거차량의 상시 접근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 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구분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LUB XIAN(피트니스클럽, GX룸, 골프연습장, 카페테리아 등) 및 일부 공용부(지하주차장 및 아파트 PIT)에는 입주지정기간을 전후하여 입주지원센터가 설치되어 입주관리업무를 진행하며, 입주 후 약 27개월까지 AS업무를 위한 사무실 및 창고가 설치되어 운영됩니다. 각 운영 기간은 단지 사정에 따라 연장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발생하는 수도 및 전기 요금 등은 관리비로 부과됩니다. CLUB XIAN에 설치되는 운동 기구는 준공 후 입주지정기간이 종료된 이후 설치될 수도 있습니다. ■ CLUB XIAN은 입주지정기간 경과 후 관리 주체에서 운영하게 되며, 운영 시 입주안내문과 CLUB XIAN 운영 홍보 내용을 통해 관리주체가 사전 고지한 시설 운영 시간과 요금표에 따라 공용 또는 개별 세대 관리비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후 공동주택관리법에 의거한 입주인 결의 등에 의해 운영시간과 요금제는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CLUB XIAN 요금은 시설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소모품비, 수도광열비, 총당금 등 제반 운영 비용을 포함하며, 관리 수입으로 전액 귀속됩니다. ■ 지하주차장 구조검토 결과에 따라 기둥, 보, 벽체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주민공동시설 내 기둥이 추가되거나 공간 계획과 인테리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스쿨버스존 내 보호자 대기소의 집기류는 별도 제공되지 않습니다. ■ 준공 후 조경 유지 관리 의무는 관리주체 및 입주자에게 있으며, 유지 관리 소홀로 인한 조경수 고사 및 조경 하자는 시공사에 책임이 없습니다. ■ 단지별 일반관리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해당 단지 CLUB XIAN은 각 단지별로 별도 운영되도록 계획되었으며, 타 단지 커뮤니티센터 사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단지별(1단지/2단지) 시설 통합 운영 여부는 입주 후 (가칭)“주민자치협의기구”의 결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p style="text-align: center;">공용설비 및 시스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력 방지를 위한 영구 배수 공법이 적용되며, 이 경우 공용 전기 요금 및 하수도 요금이 발생되고 해당 비용은 관리비에 포함하여 부과됩니다. ■ 지하 및 지상층 주출입구 엘리베이터홀에 설치되는 공조시스템 가동에 따른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해당 비용은 관리비에 포함하여 부과합니다. ■ 도시가스 공급을 위하여 단지 내 정압기가 설치되며, 설치 위치 및 제반 사항은 도시가스 공급 업체와의 최종 협의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당 현장은 도시가스 원격검침 계량기가 설치되는 아파트로 교체 비용은 가스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관련 법령 및 인허가 조건에 의해 지하저수조와 빗물저류조가 설치되며, 유지관리에 따른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해당 비용은 관리비에 포함되어 부과됩니다. ■ 지하주차장, 필로티 및 근린생활시설에는 배관 동파 방지를 위해 열선이 설치될 수 있으며, 해당 비용은 관리비에 포함하여 부과합니다. ■ 공용부위 조명 및 경관조명, 보안등, 조경용 조명, 싸인용 조명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유지, 보수, 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각 동의 저층부 및 고층부 세대는 가로등(보안등) 및 경관조명에 의한 야간조명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하 주차장 출입구의 지붕 및 지하시설물의 환기 및 채광을 위한 시설물(외부 계단, Top Light, 제연휨룸, D.A)과 인접한 저층 세대는 소음 및 조망 등의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엘리베이터와 인접한 세대는 엘리베이터 운행으로 인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기계실, 휨룸 및 이와 유사한 기계 설비 장치가 설치되는 실에 인접한 곳에서는 장비로 인한 소음, 진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 홈네트워크를 통한 화상통화는 불가합니다. ■ 주민공동시설 운영관리시스템(FMCS)은 준공일로부터 3년간 무상 제공되며, 3년 이후부터는 유상 전환됩니다. ■ 주민공동시설 운영관리시스템(FMCS)은 현장 여건에 따라 미제공 될 수 있으며, 주민공동시설 운영관리시스템(FMCS)이 적용되는 시설은 현장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무인택배 시스템 사용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은 관리비에 포함하여 부과되며, 무인 택배함은 코어당 1개소 지하에 설치될 예정이며, 설치 위치는 단지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p style="text-align: center;">커뮤니티 콘텐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보문고(2년), 솔닥(3년), 세라젬 안마기구 등은 향후 입주민의 편의를 위해 제공 예정이나, 입주자대표회의 인수인계 시 서비스가 변경/수정/중단될 수 있으며, 업체의 사정으로 인해 상품 변경 또는 서비스 제공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작은도서관에는 교보문고 큐레이션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도서는 입주 시점에 총 3,000권(기본 1,000권 및 교보문고 북 큐레이션 2,000권 추가)이 제공되며, 이후 별도 약정된 2년간 월별 100만 원 상당의 도서 큐레이션 서비스가 제공될 예정입니다. 해당 약정 기간 이후에는 서비스 운영이 종료될 수 있는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향후 운영 주체가 입주자대표회의로 인수인계될 시, 서비스 내용이 변경·수정 또는 중단될 수 있습니다. ■ CLUB XIAN의 이미지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스케일이 미반영되어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각종 시설의 위치, 형태, 명칭 등은 향후 인허가 과정상 변경될 수 있습니다. ■ CLUB XIAN 내 가구, 운동기구의 기종 및 브랜드 수량, 디자인 및 배치는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기타 집기류는 별도 제공되지 않습니다. ■ CLUB XIAN(피트니스클럽, GX룸, 골프연습장,작은도서관 등), 부속동(아너스클럽 등) 및 일부 공용부(지하주차장 및 아파트 PIT)에는 입주지정 기간을 전후하여 입주지원센터가 하며, 입주 후 약 27개월 AS업무를 위한 사무실 및 창고가 설치되어 운영됩니다. 각 운영 기간은 단지 사정에 따라 연장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발생하는 수도 및 전기 요금 등은 관리비로

구분	내용
	<p>부과됩니다. 커뮤니티 시설 등의 부대시설의 성능개선 또는 인허가 협의결과에 따라 실 시공시 위치, 동선 실내구획, 입면디자인, 마감재, 골조 사이즈 및 위치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커뮤니티 시설 내 운동기구는 준공 후 입주지정기간이 종료된 이후 설치될 수도 있습니다. ■ 솔닥 서비스(3년)는 비대면 원격 진료 및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며, 건강관리 서비스는 피트니스내의 체력측정실 장비와 연동하여 제공됩니다. 해당 서비스는 자이홀 오픈과 연동으로 입주 후 3년간 운영 예정이며, 이후 AI 메디컬리포트, 온라인 상담사, 인바디 데이터 활용 서비스 등은 유료로 전환될 예정입니다. 본 서비스는 입주자의 건강관리 편의를 위한 부가 서비스로, 입주자대표회의의 인수인계 이후 또는 서비스 제공사 사정에 따라 서비스 내용이 변경되거나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카페, 세라젬 안마기서비스,원격진료 서비스 솔닥은 이용 시 개별 비용이 발생하는 유료 서비스이며, 사업 주체 및 입주자대표회의와 전문 위탁 관리업체의 협의 과정에서 내용이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특화 프로그램 이용 시 개별 비용이 발생하여 개별 세대에 관리비로 부과되며, 전문 위탁 관리업체가 변경될 경우 서비스 종료됩니다. ■ CLUB XIAN 등 기타 부대복리시설의 디자인, 창호, 마감재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CLUB XIAN은 인허가상 1단지와 2단지가 따로 분리되어 있고, 단지별로 설치시설 및 관리비는 입주 후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단의 결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차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하주차장 천장에는 각종 배관, 배선, 장비 등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 주차장은 아파트 1,756대, 근린생활시설 10대, 총 1,766대(경차 및 장애인 주차, 환경친화적자동차 주차구역, 조업주차 미포함)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의 주차면 계획과 일반형, 확장형, 장애인, 경형 주차 구획의 위치 및 비율은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구조 형식 상 지하주차장의 주거 동 직하부와 기계실, 헬름, 및 이와 유사한 설비가 설치되는 공간에 인접한 주차 구획은 기둥 및 벽으로 인하여 차량 도어 개폐 시 간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화재안전기준에 의거 옥내 소화전의 배치 상 지하주차장의 일부 주차 구획은 차량 도어 개폐 시 간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특성상 지하주차장은 지하 2층 ~ 지하 1층까지 계획되어 있으며, 구획별로 지하주차장 층수 및 주거 동 연결 통로의 길이 및 형태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구조는 공사 여건에 따라 PC 또는 데크로 변경될 수 있으며, 피트(PIT)공간의 구획, 높이 및 면적, 비내력벽의 두께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전기차 충전시스템은 급속(옥외) 19대, 완속 69대, 완속(콘센트형) 88대 총176대 설치되며, 주차장의 위치 및 구조에 따라 배치 위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전기차 충전시스템 설치 수량은 관계법령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환경친화적 자동차 주차구역 일부가 옥외공간에 설치되어 일부세대와 인접하여 있으며, 추가 설치 및 위치변경 등을 요구할 수 없으므로 사전에 충분히 확인하신 후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콘센트형주차구역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지하 주차장의 일부 구간은 각종 배관, 배선, 장비 등의 간섭으로 통행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지하 주차장 진입 및 주행 유효 높이는 지하1층 2.7m, 지하2층 2.3m이며, 지하1층은 소형 택배차의 진입은 가능하나 사다리차, 대형차, 대형택배차 등의 진입은 불가합니다. ■ 아파트와 근린생활시설 주차출입구는 별도로 구분되어 있지 않으며 아파트 지하주차장 진출입구는 2개소입니다.
근린 생활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린생활시설의 대지지분은 아파트와 별개로 산정되어 있으나, 아파트 부지와 경계가 분리되어 있지 않아 대지지분에 따른 구획 및 분할을 요청할 수 없으며, 지상 부위의 차로 등은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로서 일체의 점유권 등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 근린생활시설의 외관과 내부 건축 계획의 변경은 아파트 계약자와 무관하게 설계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의 분양 시점에 따라 MD 계획이 미확정될 수 있으며, 추후 MD 계획 확정에 따른 면적 변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용 쓰레기분리수거소는 근린생활시설 후면에 설치되며 인접동은 이로 인한 냄새 및 소음, 분진이 발생할 수 있고 쓰레기 수거차량의 상시 접근으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용 탈취설비, 실외기, 연도 및 각종 장비비로 인하여 인근 동에 일조권·조망권·소음 및 진동·사생활 침해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은 대지 및 전면 도로의 경사도에 따라 호실별 출입문, 바닥면의 높이가 상이할 수 있으며, 단차부의 위치 및 바닥면의 높이는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 주차장 이용 차량에 의해 출입구 차단기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을 이용하는 차량은 각 근린생활시설용 주차장을 이용해야 하며, 근린생활시설의 조업을 위한 차량 등이 단지 주출입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 주차 구획은 아파트와 분리되어 있으나, 아파트 주출입구를 같이 사용합니다.
단위 세대 평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사업은 같은 타입이라도 면적이 조금씩 상이할 수 있으며, 견본주택과 달리 평면이 좌우 대칭이 될 수 있습니다. ■ 타입별 전용면적, 공급면적 및 계약면적의 소수점 이하 숫자는 실제 시공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 세대의 침실 천장 높이는 2,400mm로 시공됩니다. ■ 입주 시 세대 내 침실별 가구(불박이장)를 개별적으로 추가 설치 시 필히 실측하여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 현관, 현관 창고, 비화장 발코니, 실외기실, 하향식 피난구 등에는 바닥 난방이 시공되지 않으며, 욕실 및 다용도실의 경우, 마감 여건상 일부 구간에만 바닥 난방이 시공됩니다. (욕실의 욕조하부, 샤워부스 등에는 바닥 난방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구분	내용
발코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대 내부 벽체는 마감 품질 확보를 위하여 재료(콘크리트, 조적, 경량벽체), 길이 및 두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간 벽체에는 공사를 위한 작업 통로가 설치될 수 있으며, 작업 완료 후 조적 또는 건식 벽체로 마감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는 계획 용도에 따라 수전, 드레인 또는 선홍통이 설치되지 않을 수 있으며, 위치와 개수가 변경될 수 있고, 드레인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 내에서는 물을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 확장하지 않은 발코니는 준 외부 공간으로서 난방 시공 및 단열재가 설치되지 않으므로, 내·외부 온도 차에 의하여 결로 및 결빙에 의한 마감 손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보관된 물품은 훼손될 수 있습니다. 또한, 발코니 측벽 및 천장에 최소 결로 방지를 위한 추가 단열재 및 마감재가 시공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발코니 내부 폭 및 크기가 축소될 수 있습니다. ■ 세탁기와 보일러가 설치되는 공간 및 발코니에 수전과 실외기실에 선홍통이 설치되는 곳은 겨울철 동파가 발생할 수 있으니, 창문 닫기 및 보온 조치 등 입주자의 신중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 환기 시스템 설치 또는 시스템 에어컨 선택에 따라 실외기실 또는 다용도실 천장에 덕트, 배관 등이 노출 시공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미관이 저해되거나 천장고가 낮아질 수 있고, 내부 마감(창호와 그릴, 전등의 크기 및 위치) 및 건축 입면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화재 등 유사 시에는 계단을 이용한 피난에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발코니 내 하향식 피난구를 이용하여 하부층 세대를 통해 대피하여야 합니다. ■ 하향식 피난구 외부창호는 건본주택 기준으로 시공될 예정이며, 추후 인허가 협의에 따라 창호의 형태 및 사양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에는 결로에 의한 하자 등을 방지하기 위해 콘센트가 설치되지 않습니다. ■ 하향식 피난구 설치 세대(1층 및 필로티 상부세대 제외)는 비상 시 하향식 피난구 사용을 위해 항시 출입문은 닫힌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며, 물건을 적재하여 창고로 사용할 수 없고 하향식 피난구를 통해 층간 소음, 물청소 시 누수 및 방법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나, 시공사의 책임 범위가 아니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기본형(비확장) 세대의 경우 외부의 발코니 사용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기본형(비확장) 세대의 경우 각실과 발코니가 만나는 면에 창호가 설치되며 발코니 외부 쪽으로는 창호가 설치되지 않습니다. 또한 상층 및 하층세대 단열 및 배수 설계로 인해 발코니의 천장고 및 창호 높이가 축소 시공되며 발코니의 바닥 레벨이 거실 및 침실보다 낮게 시공되어 사용에 불편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기본형(비확장) 세대에서 전체 발코니가 연결된 경우 각실이 아닌 거실 혹은 주방 등 특정 실을 통해서만 출입이 가능하게 되어 생활에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동일한 타입의 세대에서도 발코니 인접세대 간 조건에 따라 천장고, 발코니 실제 사용 면적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마감과 창호규격, 위치가 다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발코니서비스면적의 증감은 분양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위세대 타입 및 실에 따라 적용되는 창호 및 하드웨어(손잡이 등)가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저층 세대의 외벽 마감재 설치에 따라 외부 창호는 다소 축소 및 변경될 수 있으며, 벽체 두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시 아파트 외부 창호는 일부 세대의 발코니 장식물 부착 및 내풍압 구조 검토에 따라 세대별, 층수별로 창호 사양(창틀, 하드웨어, 유리 등)이 변경 및 축소될 수 있으며, 세대에 설치되는 창호의 개폐 방향, 날개 벽체 및 분할은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외부창 및 내부 창호의 사양(제조사, 브랜드, 디자인, 개구부 및 프레임 사이즈, 창틀, 하드웨어, 유리 두께 및 색상 등)은 공급업체 사정에 따라 건본주택에 설치된 제품과 상이한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으나 동등급 이상으로 설치됩니다. ■ 현장 여건 및 입주자 사용성 개선을 위해 목문의 사양(문틀 및 문짝의 폭, 높이, 재질, 개폐방향, 디자인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보일러 설치로 다용도실 창호 일부가 고정되어 사용에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며, 고정창에는 손잡이가 설치되지 않습니다. ■ 창호에 설치되는 방충망의 형태는 본 공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겨울철 밀폐된 생활 환경 속에서 음식 조리, 가습기 사용, 실내 화분, 빨래 등으로 인해 실내 상대 습도가 40~50% 이상이 될 경우에는 창호 유리면 및 창틀 주변에 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자연환기 또는 세대 환기 시스템을 작동하여 결로 현상을 예방해주시기 바랍니다. ■ 거실 및 안방 발코니의 외부 창호는 투시형(철제)난간으로 이삿짐 차량을 이용한 운반 시 파손을 방지하기 위한 보양 조치에 대한 책임은 입주자에게 있습니다. ■ 철제문의 경우, 공급업체 사정에 따라 건본주택에 설치된 제품과 상이한 사양(디자인, 문짝 두께, 문틀, 경첩의 형태, 하드웨어, 마감 등)으로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저층부(1~3층) 세대의 창호에 한하여 방법 보안 강화를 위해 방법안전창이 적용되며, 그 외 층(4층 이상)은 설치 대상에서 제외되오니 청약 및 계약 시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옥외공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옥외공간에 배수구가 설치된 경우에는 물막힘 및 동파로 인한 해당 세대 우수 유입 및 하부 세대 누수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입주자의 신중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 옥외공간 바닥은 콘크리트 마감이며, 바닥 레벨은 본 공사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최상층 옥외공간에는 통기 배관 및 연도가 노출 설치 될 수 있으며, 조망권·소음 및 진동, 냄새, 사생활 침해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옥외용 수전이 설치 된 경우에는 겨울철 동파 방지를 위해 입주자의 신중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구분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옥외공간에는 우수 또는 배수 드레인이 노출되어 시공될 수 있으며 수량 및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옥외공간 진입을 위해 단위세대 발코니 외부 창호에는 난간이 설치되지 않고, 옥외공간 외곽에 난간이 설치될 수 있으며, 재질 및 색상, 높이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사업 주체 및 시공사가 준공 시 입주자에게 인도하는 옥외공간 건축 기본 마감(방수, 단열, 무근콘크리트) 외에 입주자의 추가적인 시공(데크, 타일 마감 등) 중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입주자에게 책임이 있으며, 입주자는 옥외공간 상부의 허용하중, 방수, 배수에 대한 기본 설계 조건에 대해 전문가의 확인을 받은 후 시공해야 하며 공사 시 인접 세대 및 하부 세대에 통보 후 동의를 구하고 시공하여야 합니다. ■ 면적에 포함되지 않은 옥외공간은 건축법 상 상부 지붕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 옥외공간 상부에는 낙하물 방지를 위한 시설물이 계획될 수 있으며, 실시설계 시 형태, 크기, 위치, 유무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옥외공간에는 추후 유지보수를 위한 고소 작업 시 근로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안전고리 혹은 안전고리 체결용 매입철물 등이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일부 세대에는 프라이버시를 위해 옥외공간에 세대간 경량칸막이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경량칸막이의 크기, 위치, 재료, 디자인, 색상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개방형 발코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방형발코니의 옥외공간 바닥은 타일 마감이며, 바닥 레벨은 본 공사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개방형발코니 출입을 위해 외부 창호에는 난간이 설치되지 않고 개방형발코니 외곽에 난간이 설치되며, 재질 및 색상, 높이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사업 주체 및 시공사가 준공 시 입주자에게 인도하는 개방형발코니의 건축 기본마감(방수, 몰탈, 타일) 외에 입주자의 추가적인 시공(데크, 녹화 마감 등) 중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입주자에게 책임이 있으며, 입주자는 개방형발코니 상부의 허용하중, 방수, 배수에 대한 기본 설계 조건에 대해 전문가의 확인을 받은 후 시공해야 하며 공사 시 인접 세대 및 하부 세대에 통보 후 동의를 구하고 시공하여야 합니다. ■ 개방형발코니에는 수전이 설치되지 않고, 바닥 배수는 난간턱의 관통 슬리브(훤구멍)을 통해 배수되며 별도의 마감은 없습니다.
가구 및 마감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붙박이 가구(신발장, 주방가구, 욕실장, 빌트인 제품 등)로 가려지는 벽, 바닥, 천장의 마감재는 설치되지 않으며, 가구 하드웨어(힌지, 레일, 조명, 스위치 등), 마감사양은 본 공사 시 동급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적용되는 마감 자재는 자재의 품질, 품귀, 생산 중단, 제조 회사의 도산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동급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타입별 옵션 선택에 따라 가구 및 수납 계획(디자인, 크기, 도어갯수 등), 우물천장 크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욕실 출입문(부부, 가족) 및 다용도실은 본공사 시 PVC 계통(ABS) 도어로 시공됩니다. ■ 인접 세대간 사생활 침해 최소화를 위해 일부 세대 아트월 방향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배선기구, 조명기구, 월패드, 설비 배관 등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위생도기, 수전류 및 각종 액세서리류(수건걸이, 휴지걸이 등)의 설치 시 현장 여건에 따라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욕실거울, 수전류, 각종 액세서리류(수건걸이, 휴지걸이 등) 및 샤워부스, 철재류는 녹발생 방지를 위하여 알칼리나 산성세제가 아닌 중성세제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목창호, 시트 패널 등의 고정을 위해 본공사 시 Staple Tacker가 사용되며, 시공 자국이 보일 수 있습니다. ■ 욕실장, 샤워부스, 시스템선반의 형태, 색상, 하드웨어의 사양 등이 동급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다용도실 또는 발코니에 건조기 사용 시 온도 및 습도가 상승될 우려가 있어, 결로 및 기타 하자 방지를 위하여 환기 등 입주자의 신중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 마감 표면재(벽지, 시트, LPM, 마루 등)는 제품 생산 시 미세한 색상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석재류(인조석재 포함)는 자재 특성 상 색상, 무늬, 패턴 등이 균일하지 않을 수 있으며, 현장 여건에 따라 본 공사 시 나누기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유리류는 자재 특성 상 조명 및 각도 등에 따라 색상이 다르게 보일 수 있으며, 견본주택에 적용된 제품과 동급 이상의 자재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라믹 타일류는 재료적 특성 상 각 장 별 색상 및 패턴의 차이(멀티 패턴 타일)가 있을 수 있고, 시공 시 인접 타일과 줄눈 두께 상이 혹은 단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현장 여건에 따라 본 공사 시 나누기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바닥에 적용되는 타일은 균열 및 파손 하자를 예방하기 위해 분절시공 될 수 있습니다. ■ 양변기 인근 매립형 휴지걸이를 설치할 공간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는 노출형 휴지걸이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창호 상부의 커튼박스는 천장 속 배관 및 단열 마감을 위하여 커튼박스의 폭, 깊이, 길이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공사 시 공사 품질 향상을 위해 재료분리대, 몰딩 등이 추가, 변경 시공 될 수 있습니다. ■ 현관중문은 타입별 사양(개폐 타입, 사이즈 등)이 다르며, 본 공사 시 형태, 재질, 색상, 하드웨어의 사양 등이 동급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거실 내부에 설치하는 출입문의 고정부 모서리면에는 손 끼임 방지장치가 제공되며 디자인, 색상, 크기, 형태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기본형 또는 확장형 평면에 제공되는 품목(주방 가구, 냉장고장, 붙박이장, 드레스룸 선반 등)이 서로 차이가 있으므로, 계약 전 확장 시 제공 품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간 유·무상 옵션 등에 따라 타입별 평면 및 마감재 적용 부위가 상이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마루의 특성상 색상, 무늬, 패턴 차이와 옹이는 자연스러운 것으로 하자가 아닙니다. ■ 세대 내 욕실 벽체는 조적벽 대신 건식공법이 적용되며, 벽체 두드림 시 발생하는 소리는 하자가 아닙니다. 입주자의 추가적인 욕실 시공(바닥방수, 바닥난방, 타일마감 등)중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입주자에게 책임이 있으며, 입주자는 추가 시공 시 방수, 배수에 대한 기본 설계 조건에 대한 전문가의 확인을 받은 후, 착수 전에 인접 세대 및 하부 세대의 동의를 구하여야 합니다. ■ 세대 내 욕실 천장에는 관계법령에 따른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등기구 및 환기설비 위치가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픽처레일은 세대 당 1개소 기본 제공되며, 조명 및 실링팬 style up 선택 시 위치와 길이는 변경됩니다. (타입별 픽처레일의 위치와 길이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전기 기계설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방 및 거실의 천장에 도시가스 법규에 따라 가스누출탐지를 위한 점검구 또는 누출 점검이 가능한 설비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환기 시스템 및 욕실 배기, 주방 배기를 위하여 외부에 환기캡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건축 입면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욕실에는 바닥 배수구와 환기를 위한 욕실팬이 설치됩니다. ■ 세대 내부의 욕실 단차는 바닥 구배 시공으로 인해 준공 도면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욕실 출입 시 욕실문에 의한 신발 걸림이 있을 수 있습니다. ■ 환기 디퓨저, 가스배관 및 계량기 위치는 공사용 설계 도면 기준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가스배관은 설치 위치에 따라 노출되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에어컨은 실외기 공간을 감안하여 에어컨 성능에 지장이 없도록 입주자가 설치하여야 합니다. ■ 입주자의 필요에 따라 추가의 에어컨 설치 시에는 별도의 실외기 고정가대 및 에어가이드 설치를 하여야 원활한 사용이 가능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에어컨 가동시 실외기실 루버는 반드시 열려있어야 되며, 루버 부근에 방충망 또는 물건 적치 시 공기 순환 장애로 인한 효율 저하 및 과열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 자동제어시스템 및 온도,환기조절기 등은 환기형 공기청정시스템 선택 유무 및 내부 시스템 업그레이드에 따라 견본주택에 설치된 제품과 상이한 제품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스프링클러, 소화기, 시각경보장치 및 소방감지기는 견본주택 소화 시설물로서 본 공사 시 설계 도면 및 화재안전기준에 의해 시공됩니다. (본 공사 시 상기 사항 적용에 따른 일부 마감 사양, 우물천장, 커튼박스, PL창호, 주방가구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2층 세대 하부에 각동 제연을 위한 급기구가 설치되며, 설치 위치는 동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외벽 또는 세대 실외기실 등에 가스 입상배관이 설치될 수 있으며 내부 일부 층에 루프 배관 등으로 미관 저해 및 공간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외부 특화 마감(커튼월록)으로 인해 107동 및 108동의 84C 타입 실외기실에 가스 입상배관 및 신축이음배관이 설치되어 미관 저해 및 공간 제약이 발생합니다. ■ 욕실, 드레스룸 및 팬트리 난방 제어를 위한 온도조절기는 별도로 설치되지 않으며, 난방 배관 설계에 따라 인근 온도조절기(거실용 또는 침실용)에 의해 통합 제어 될 수 있습니다. ■ 침실, 알파룸이 옵션 선택에 따라 대형 드레스룸 및 팬트리로 변경 또는 주방과 통합될 경우(주방Style Up 유상옵션) 온도 조절기는 설치되지 않을 수 있으며, 난방 배관 설계에 따라 인근 온도조절기(거실용 또는 침실용)에 의해 통합 제어 될 수 있습니다. ■ 자이패스 시스템의 스마트폰 연동은 스마트폰 OS 정책에 따라 사용에 불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원패스카드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 세대 내 배선기구(스위치, 콘센트), 전자식스위치, 조명기구, 월패드, 통신 단자함, 세대 분전반의 위치 및 수량은 단위세대 평형, 타입, 옵션, 위치 등에 따라 변경됩니다. ■ 세대 통신 단자함, 분전반의 규격은 변경될 수 있으며, 커버가 노출 시공됩니다 ■ 전기 쿡탑 기본적용에 따라 가스배관은 세대 가스 계량기가 설치된 장소까지만 제공되고, 이 경우 가스쿡탑 설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추후 별도 가스배관을 설치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지자체 허가가 필요한 사항이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방에 설치되는 자동식 소화기는 사용 열원에 맞는 종류로 설치됩니다. ■ 주방 옵션 선택 시 후드 타입에 따라 인근 천장에 자동식 소화기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일부 대형 평형에는 싱크대 하부 난방분배기 이외 별도 추가의 난방분배기가 설치될 수 있으며 공간 제약과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소방인허가청 요구조건에 따라 2층에는 완강기가 설치되며, 3~10층 구간에는 침실, 거실, 발코니 등 단위세대 내부에 완강기가 설치될 수 있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 내 설치된 비데 리모컨 설치 위치는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설치 위치는 향후 변경 될 수 있으며, 입주 시에는 리모컨을 미부착 후 기본 제공하여 드리오니 입주자의 사용 편의성 및 선호 위치에 부착하여 사용 하실 수 있습니다.

구분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조기와 세탁기를 2단 설치 하는 경우 가스보일러 점검 또는 교체 시 건조기와 세탁기 분리와 재설치를 위한 별도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거실 조명 옵션 선택 시, 현관 신발장 상부 수납함 내부에 SMPS함이 설치되어, 수납공간이 줄어듭니다. ■ 실외기실 천장에 설치 예정인 세대 전열교환기 가동은 환기형 공기청정시스템 옵션 선택 시 환기형 공기청정시스템 장비 본체에 내장된 센서에 의해 운전되며, 기본 제공하는 거실 센서는 제외됩니다. ■ 시스템 에어컨 옵션 선택 시 기본 냉매 매립배관은 천장 속 노출 냉매 배관으로 변경 시공되며, 시스템 에어컨 설치 공사비는 변경 공사를 감안하여 산정한 금액입니다. ■ 시스템 에어컨 옵션을 선택하지 않고 별도로 시공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인허관청 허가가 필요한 사항이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도시가스 연료를 사용하며, 세대별 보일러를 설치한 개별난방 방식이 적용됩니다 ■ 세대 보일러는 적정한 용량을 선정하였으나, 온수를 동시에 사용할 경우 온수 사용에 따른 불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급수 분배기, 급탕 분배기의 설치위치는 설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각의 욕실 세면기 후면에 분배기 박스설치가 계획되어 있으며, 설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다용도실 창 중 보일러 연도 쪽 창 한쪽면은 고정창으로 시공 될 수 있습니다. ■ 다용도실 천장과 벽면에 상부층 배관과 가스배관, 가스계량기가 노출 시공되며, 이로 인해 미관이 저해되고, 일부 천장고가 낮아질수 있고, 배수소음이 전달될 수 있습니다.
<p>건본주택</p>	<p>건본주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본주택 내에는 기본 제공 마감재 이외의 유상옵션 품목 또는 디스플레이를 위한 상품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건본주택을 관람하시고 분양가에 포함된 품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건본주택의 온도조절기, 환기디퓨저, 스프링클러 헤드, 환기형 공기청정시스템, 시스템 에어컨은 상황에 따라 타입, 위치, 수량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동일한 타입도 옵션 선택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건본주택의 배선기구, 조명기구, 월패드, 통신 단자함, 세대 분전반은 상황에 따라 타입 및 위치, 수량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동일한 타입도 옵션 선택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건본주택에 설치된 월패드의 디자인, 기능 및 UI는 예시안으로 본공사 시 변경될 수 있으며, UI 구성은 설계 및 선택 옵션 사항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건본주택에 설치된 전자식스위치는 유상옵션으로 설치되어 있으며, 유상옵션을 선택하지 않은 세대는 기본형 전자식 스위치가 설치됩니다. ■ 건본주택에 설치된 조명기구는 유상옵션으로 설치되어 있으며, 유상옵션을 선택하지 않은 세대는 GS건설 표준화조명이 설치됩니다. ■ 건본주택 내 설치된 CCTV는 건본주택용으로 본 공사 시 설치되지 않습니다. ■ 건본주택은 분양 후 일정 기간 공개를 거쳐 폐쇄 및 철거할 수 있으며 철거 전 동영상 또는 사진으로 건본주택 내부를 촬영하여 보관할 예정입니다. ■ 건본주택에 미건립된 타입의 경우 건본주택에 설치된 유사 타입과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계약 시 상담을 통해 평면 및 마감재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신 후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건본주택에 설치된 위생기구는 유상옵션으로 설치되어 있으며, 유상옵션을 선택하지 않은 세대는 기본형 위생기구가 설치됩니다. ■ 건본주택에 설치된 조명기구는 유상옵션으로 설치되어 있으며, 유상옵션을 선택하지 않은 세대는 GS건설 표준화조명이 설치됩니다. ■ 건본주택에 세대 창 밖으로 보이는 조경, 식재, 조망은 본공사와 관련없는 전시용입니다.

건본주택

위치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영시간 : 10:00 ~ 17:00 ■ 운영기간 : 분양종료시까지 ■ 대표번호 : 1533-5400 ■ 홈페이지 : https://xi.co.kr/dax <p>※ 일정에 따라 관람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사전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p>